

우범소년 규정 폐지 필요성 토론회

3.09 2021 화요일 14:00

YouTube 박완주 TV 온라인 생중계



사회 유현동 (한국아동인구환경의원연맹 사무국장)

좌장 원혜욱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발표 강정은 (사단법인 두루 변호사)
박병수 (국가인권위원회 아동청소년인권과 과장)

토론 양현규 (법무부 소년범죄예방팀 팀장)
정혜림 (법원행정처 민사지원제1심의관실 사무관)
고평기 (경찰청 아동청소년과 과장)
팽주만 (교육부 학교생활문화과 연구관)
이승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주최

 국회의원 박완주  국회의원 이규민  국회의원 최기상

 정춘숙 국회 여성가족위원장  한국아동인구환경의원연맹

 국제아동인권센터  사단법인 두루

목차

환영사 · 7

국회의원 박완주
국회의원 정춘숙
국회의원 이규민
국회의원 최기상

발제 · 15

아동의 권리에 비추어 본 우범소년 개정방향
장정은 변호사(사단법인 두루)

우범소년 관련 법 규정 정비 필요성
박병수(국가인권위원회 아동청소년과장)

토론 · 65

양현규 (법무부 소년범죄예방팀 팀장)
정혜림 (법원행정처 민사지원제1심의관실 사무관)
고평기 (경찰청 아동청소년과 과장)
팽주만 (교육부 학교생활문화과 연구관)
이승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우범소년 규정 폐지 필요성 토론회

01 환영사

국회의원 박완주
국회의원 정춘숙
국회의원 이규민
국회의원 최기상

환영사



한국아동·인구·환경의원연맹 부회장 / 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을

국회의원 박완주

안녕하십니까, 한국아동·인구·환경의원연맹 아동분과 부회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을 국회의원 박완주입니다.

먼저 <우범소년 규정 폐지 필요성 토론회>를 함께 주최하는 한국아동인구환경의원연맹과 정춘숙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님, 최기상 의원님, 이규민 의원님, 국제아동인권센터, 사단법인 두루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토론회는 위기아동에 대한 잠재적 범죄자로 낙인을 찍는 우범소년 규정이 과연 필요한 것인지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소년법」제 4조 1항은 ‘우범소년’에 대해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의 소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9세 미만의 소년에게 죄를 범할 우려만으로 사법재판에 따른 처분을 부과하는 것이 오히려 낙인효과를 부르고 범죄행동에 더 노출시킬 가능성이 많다고 우범소년 규정의 폐지 필요성이 제기되어왔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17년 ‘우범소년 조항 삭제’를 검토하라고 법무부장관에게 권고한 바 있지만 관련 규정은 지금까지 존치되어 있습니다. 경찰청 우범소년 송치인원은 2016년 178명에서 2019년 799명으로 -> 3년새 4배 가까이 급증하기까지 했습니다. 위기아동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적기에 제공되지 않는 현실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최근 2019년 10월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우범소년 규정 폐지 권고를 하였으며, 법무부 소년보호 혁신위원회(위원장 서보학)도 2020년 12월 30일 우범소년 규정 폐지를 권고하였습니다. 우범소년

제도가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목적의 「소년법」 취지에 부합하는 것인지 본격적으로 논의될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토론회에서 우범소년 제도에 대해 깊이있는 토론이 이뤄지길 바라며, 제시해주신 고견을 바탕으로 국회차원에서 위기 아동·청소년을 배제가 아닌 포용의 정책을 구상해 뒷받침해나가겠습니다.

좌장을 맡아주신 원혜옥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 강정은 (사)두루 변호사님, 박병수 국가인권위원회 아동청소년인권과 과장님, 이승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님, 고평기 경찰청 아동청소년과 과장님, 양현규 법무부 소년범죄예방팀 팀장님, 정혜림 법원행정처 민사지원 제1심의관실 사무관님, 교육부 학교생활문화과 팽주만 연구관님께 발제와 토론을 맡아주셔서 각 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환영사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이자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경기 용인병

국회의원 정춘숙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이자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인 경기 용인병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정춘숙입니다.

‘우범소년 폐지’라는 중요한 주제로 토론회를 함께 주최해주신 박완주·최기상·이규민 의원님과 국회 한국아동인구환경의원연맹(CPE), 국제아동인권센터, 사단법인 두루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토론회에 참석해주신 내외빈분들께도 감사를 전합니다.

‘우범소년 폐지’는 지난 20대 국회에도 주요하게 논의되던 과제입니다. 현행 「소년법」 제4조 1항 제3호에 따르면,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인 소년을 보호처분(소년보호 시설 위탁, 소년원 송치 등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성인에게는 죄가 아닌 행위를 ‘아동’이라는 이유로, 범죄를 행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낙인찍고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자 인권 침해입니다.

지난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 2019년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와 최근 2020년 12월 법무부 소년보호혁신위원회에서도 우범소년 규정 폐지를 권고했습니다. 2020년 8월 발표된 ‘제2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20~2024)’에서도 향후 개선해야 할 과제로 ‘우범소년 제도 개선’을 꼽았습니다. 이처럼

국제 인권기준과 국내 여건을 고려할 때, 법개정이 조속히 추진되어야 합니다.

강정은 변호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등의 우범사유는 아동이 처한 위기상황 혹은 복지적 개입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신호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에 깊이 동감합니다. 정치가 아이들을 위해 해야 할 일은 사법적 제재가 아니라 아동복지 사각지대를 점검하고, 개선해나가는 것입니다. 가출한 아이들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집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던 이유를 살피고, 아이들이 접할 수 있는 유해환경을 개선해야 합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국내에 우범소년에 대한 객관적 통계가 부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현행 법이 유지되어야 할 마땅한 근거가 없습니다. 반면, 2018년 국가인권위원회 연구에 따르면, 아동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아동양육시설의 장이 통고하여 소년분류심사원, 소년보호시설, 소년원 등에 구금되는 사례가 다수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현행 우범소년 제도는 시설아동, 가정폭력 및 학대 아동 등 취약계층에게 악용될 우려가 큼니다.

지난해 5월, 텔레그램 n번방 성착취 대책으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대상아동·청소년’ 규정이 삭제된 것처럼, 「소년법」상의 우범소년 규정 역시 전면 삭제되어야 합니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 해법이 모색되고,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길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저 정춘숙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아동·청소년이 권리의 주체로 존중받고, 자존감과 행복감을 높일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입법과 정책개선 활동에 힘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영사



더불어민주당 안성시
국회의원 이규민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안성시 이규민 의원입니다. 먼저 우범소년 제도 폐지를 위해 노력해 주시는 각계 전문가 여러분 및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현행 「소년법」에 따르면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는 행위,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는 행위 등을 하는 10세 이상 소년(이하 ‘우범소년’)의 경우, 소년부의 보호사건 대상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이는 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우려만으로 사법재판에 따른 처분을 부과하는 규정입니다.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재판장에 세워지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따른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 조치이며, 심각한 인권침해 행위로 아동을 건전하게 돕는다는 소년보호 처분의 취지에도 어긋납니다. 게다가 위기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낙인을 강화하는 것으로, 청소년에게 일생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일입니다.

실제로 ‘우범성’만으로 미결구금된 사례가 있으며,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우범소년 실태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1월~10월 사이 ‘우범성’만으로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인원이 50명에 달합니다.

이렇게 우범소년 제도로 아이들을 교화시킬 수 있다는 생각은 어른들의 행정 편의적 발상이자, 구시대적 훈육 방식입니다. 이에 저는 지난 1월 15일 ‘우범소년폐지’ 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현재 여성가족부에서는 우범소년에서 규정하는 아동과 같은 '위기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생활지원, 의료지원, 상담지원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범소년'이 아니라, '위기청소년'으로서 국가는 그에 맞는 전문적 지원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잠재적 범죄자라는 낙인이 아니라,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국가의 세심한 울타리가 필요합니다.

오늘 토론회가 우범소년 폐지의 당위성을 역설하고, 위기아동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 이규민도 '우범소년 제도' 폐지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향후 위기청소년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영사



더불어민주당, 서울 금천구

국회의원 최기상

안녕하십니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입니다.

오늘 정춘숙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 박완주·이규민 국회의원, 한국아동인구환경의원연맹, 국제아동인권센터, 사단법인 두루와 함께 <우범소년 규정 폐지 필요성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어 무척 기쁩니다.

바쁘신 와중에 이 자리를 위해 힘써주신 발제자, 토론자 및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소년비행의 방지에 관한 유엔지침」(1990. 12. 14. 유엔총회 채택)은 '아동이 불필요하게 낙인찍히고 피해를 입거나 범죄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 성인이 했을 경우 범죄로 인식되지 않고 처벌받지도 않는 행위라면 아동이 해도 범죄가 되지 않고 처벌되지 않도록 법률이 제·개정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 「소년법」은 "죄를 범한 소년,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 그리고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癖(性癖)이 있는 것,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는 것,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癖이 있는

것'에 해당하고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 소년"을 '우범소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을 발견한 보호자 또는 학교·사회복지시설·보호관찰소의 장은 관할 소년부에 통고할 수 있고, 법원으로부터 보호처분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된 때는 수감명령,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의 보호처분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우범소년제도는 헌법이 규정하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위배되며, 유엔아동권리협약이 보장하는 위법적·자의적으로 자유를 박탈당하지 않을 아동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우범'이라는 이름으로 잠재적 범죄자로 낙인찍힌 아동들은 사회에서 배제되고 오히려 범죄에 노출될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우범소년 규정을 담은 소년법이 제정된 지 60여 년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아동의 가출의 배경에 가정폭력 등 위기상황이 있지는 않은지, 보호자 및 학교 등의 장애 의한 우범소년 통고제도의 오·남용 가능성은 없는지, 사법적 제재 대신 보호와 지원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다시 물어야 할 때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그 물음의 시작이 되어, 아동의 기본적 권리 보호와 아동사법의 특수성에 대한 이해를 전제로 한 소년법 개정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범소년 규정 폐지 필요성 토론회

01 발제

아동의 권리에 비추어 본 우범소년 개정방향
강정은 변호사(사단법인 두루)

국회의원 박완주 & CPE 「위기아동 지원방안 마련 연속토론회」 #2

아동의 권리에 비추어 본 우범소년 개정방향

강정은 변호사(사단법인 두루¹⁾)

1 우범소년 개정 배경

A²⁾는 아동양육시설에서 자랐다. 시설장은 A가 가출했다는 사유로 법원에 통고했고, A는 첫 번째 소년보호재판에서 1호(보호자 감호위탁), 2호(수감명령), 4호(1년 보호관찰) 처분을 받았지만 처분이 내려진 재판 당일 또 가출을 했다. 이 일로 시설에서 받을 징계가 두려웠기 때문이다. A는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었고, 두 번째 재판을 받아 6호 처분(아동복지시설·소년보호시설 감호위탁)과 5호 처분(2년 보호관찰)을 받았다. A를 보호하던 6호시설장은 A의 생활태도가 불량하고, 휴대폰을 몰래 사용하였으며 이탈을 모의했다는 사유로 법원에 보호처분을 변경해달라고 신청했다. A는 다시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었고, 세 번째 소년보호재판을 받아 2년 소년원 처분(10호 처분)을 받았다.

A가 재판을 받은 사유는 가출, 생활태도 불량, 휴대폰 사용, 이탈 모의가 전부다. 소년보호재판은 A와 함께 생활하는 시설의 장이 법원에 A의 가출사실을 '통고'하면서 시작되었다. 과연 A가 '성인'이었다면, 그리고 '시설'이 아닌 가정환경에서 생활했다라도 같은 결론이었을까.

1) 비영리전업 공익변호사단체, www.duroo.org

B³⁾는 초등학교 재학 시절 부모의 다툼에서 벗어나기 위해 첫 가출을 했다. 아버지는 어머니에게 폭력을 행사했고, B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싸움이 일상인 환경에서 성장했다. 아동학대 내지 가정폭력 재범 우려가 높은 가정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구청의 사례관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아버지가 경찰서에 찾아가 B의 비행사실을 알렸고, 경찰서장의 송치로 B는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되었다. 비행사실은 스마트폰 중독과 가출, 부모의 동의 없는 스마트폰 소액결제, 그리고 인터넷방송 등을 이용해 불상의 성인 남성들과 만나 가출하거나 성인처럼 옷을 입고 다녀 성범죄에 연루될 우려가 매우 높다는 것이었다. B는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었다가 부모가 B를 보호하기 어렵고 시설처분을 원하고 있으며, B에게 치료가 필요하다는 이유 등이 고려되어 7호 처분(**소년원 치료감호)을 받았다.

B가 소년보호재판을 받은 이유는 가출하고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으며 앞으로 성범죄에 연루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었다. B가 제대로 정신을 차리기 위해서는 시설처분을 받아야 한다는 학대행위자인 아버지와 어머니의 의사가 주요하게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성착취범죄의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도 중요하게 작용했다.

이와 같이, 아동사법제도^{*4)}를 경험하는 아동⁵⁾은 특별한 집단이 아니다. ‘범죄소년’, ‘촉법소년’, ‘우범소년’, ‘보호소년’ 등으로 명명되고 있지만, 우리와 함께 생활하고 매일 마주하는 아동일 뿐이다. 「아동복지법」이 정하는 “보호대상아동” 혹은 “지원대상아동”일 수 있고, 「청소년복지지원법」이 정하는 “위기청소년”일 수 있다.

‘우범소년’이란, 범죄를 저지르지는 않았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는 등의 사유가 있고 그의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소년을 일컫는다. 우범소년은 1958년 「소년법」(이하 ‘소년법’) 제정 당시 “가정의 환경 또는 본인의 성벽을 참작하여 죄를 범할 염려 있는 12세 이상의 소년으로 경찰국장으로부터 송치된 자”로 규정되었다(제4조 제3호⁶⁾). 이후 1963년에는 우범사유를 열거하는 방식으로 개정되었다가, 2007년에는 우범사유를 좀 더 구체화하였고 적용연령을 12세에서 10세로 하향하였다.

<p>소년법 [시행 1963. 10. 1.] [법률 제1376호, 1963. 7. 31., 일부개정]</p>	<p>소년법 [시행 2008. 6. 22.] [법률 제8722호, 2007. 12. 21., 일부개정]</p>
<p>제4조 (보호의 대상과 송치 및 통고)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년은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p> <p>1. 죄를 범한 소년</p> <p>2.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2세이상 14세미만의 소년</p> <p>3. 다음에 열거하는 사유가 있고 그의 성격 또는 환경에 비추어 장래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2세 이상의 소년</p> <p>가. 보호자의 정당한 감독에 복종하지 않는 성벽이 있는 것 나. 정당한 이유 없이 가정에서 이탈하는 것 다. 범죄성이 있는 자 또는 부도덕한 자와 교제하거나 자기 또는 타인의 덕성을 해롭게 하는 성벽이 있는 것</p> <p>② 전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소년이 있을 때에는 경찰서장은 직접 관할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소년을 발견한 보호자 또는 학교와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이를 관할소년부에 통고할 수 있다.</p> <p>[전문개정 1963. 7. 31.]</p>	<p>제4조 (보호의 대상과 송치 및 통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년은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p> <p>1. 죄를 범한 소년</p> <p>2.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p> <p>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고 그의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인 소년</p> <p>가.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性癖)이 있는 것 나.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는 것 다.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는 것</p> <p>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소년이 있을 때에는 경찰서장은 직접 관할 소년부에 송치(送致)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년을 발견한 보호자 또는 학교·사회복지시설·보호관찰소(보호관찰지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이를 관할 소년부에 통고할 수 있다.</p> <p>[전문개정 2007. 12. 21.] 다.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p>

2) 발제자가 실제로 수행한 사건을 요약하여 제시하였다.

3) 위와 같다.

4)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2019년 아동사법체계에서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일반논평 제10호를 업데이트한 일반논평 제24호(CRC/C/5) GC/24)를 발표했다. 일반논평 제24호에서 형사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거나, 기소되거나, 유죄로 인정된 아동에게 낙인을 찍지 않는 용어를 사용하기를 권고하면서 ‘juvenile justice’(소년사법)에서 ‘child justice’(아동사법)라는 용어로 바꾸어 사용하고 있다. 비행의 관점을 담고 있는 ‘소년사법’이라는 용어를 ‘아동사법’으로 바꾸어 사용함으로써 아동사법에 연루된 아동 또한 보편적인 권리를 누려야 하는 아동과 다르지 않다는 관점의 변화를 강조할 필요가 있다.

5) 이 글에서 ‘아동’은 법적으로 미성년자, 청소년, 소년, 연소자, 자녀 등으로 불리는 사람을 포괄하여 지칭하는 것으로 한다.

6) 제4조 (보호의 대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년은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

1. 법관 또는 검사로부터 송치된 소년
2.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2세이상 14세미만의 소년으로 경찰국장 또는 경찰서장으로부터 송치된 자
3. 가정의 환경 또는 본인의 성벽을 참작하여 죄를 범할 염려있는 12세이상의 소년으로 경찰국장으로부터 송치된 자

‘범죄소년’, ‘촉법소년’, ‘우범소년’에 해당하는 아동을 발견한 보호자 또는 학교의 장, 사회복지시설의 장, 보호관찰소의 장이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바로 소년부(법원)에 통고할 수 있는 규정(제4조 제3항)은 1963년 개정 소년법에서 신설되어 현재까지 존재해오고 있다. 법원에 통고할 수 있는 주체에는 보호자, 학교의 장, 사회복지시설의 장, 보호관찰소의 장이 있는데, 이 가운데 ‘보호관찰소(보호관찰지소를 포함)의 장’은 2007년 개정 당시 추가되었다. 소년법 제4조는 2007년 개정 당시 모습을 지금까지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우범소년 규정의 입법 취지는 보호주의 이념에 따라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는 아동을 조기에 발견하여 선도와 보호를 통한 장래의 범죄 예방과 동시에 범죄소년으로서의 발전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⁷⁾ 아동을 포함하여 사람이라면 누구나 보호를 필요로 한다. 하지만 이러한 ‘보호’의 내용이 아동의 자유를 박탈하는 처우라면, 우리의 고민은 달라야 한다.

가. 아동사범 관련 정부 주요정책에 대한 검토

우범소년 개정방향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최근 발표한 아동사범 관련 주요대책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2019. 5. 23. 발표된 ‘포용국가 아동정책’에는 범죄혐의를 받거나 법을 위반한 아동을 위한 제도가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다.

2020. 8. 발표된 ‘제2차 아동정책 기본계획(2020.~2024.)’에는 “우범소년 제도 개선 추진”을 밝히고 있다. 이는 2019. 10.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대한민국에 대한 제5-6차 심의에 따른 최종견해에서 ‘우범소년 폐지’를 권고한 것이 고려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다만, 우범소년 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비행 초기단계 아동·청소년 대상 비행예방교육 강화 등 소년법 개정 검토”를

제시함으로써, 여전히 비행에 대한 관점과 이를 이유로 개입하는 틀을 유지하고 있어 ‘우범소년’으로 불리는 아동은 복지적 지원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우범소년 폐지 권고의 취지를 제대로 실현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제1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15.~2019.)’에는 2016년까지 대법원과 법무부, 경찰청이 합동으로 소년사범 발전 종합 대책을 마련하여, 소년사범 종사자 적정 배치, 소년사범기관과 아동보호체계 간 연계를 통해 위기아동 발견, 우범소년 등에 대한 지역사회의 보호 강화, 소년원 과밀해소 및 관리인력 충원, 범죄 초기단계 아동 및 보호관찰 대상 아동 지역사회 보호강화, 보호관찰을 받는 아동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해 지역사회 내 자원 활용 강화 등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제1차 아동정책기본계획이 발표된 이후 ‘소년사범 발전 종합 대책’ 관련 자료를 찾을 수 없을 뿐 아니라, 제시되었던 과제들이 어떻게 이행되었는지 그 과정과 결과를 좀처럼 알기 어렵다. 그동안 아동사범 현상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점에 미루어 보아, 관련 내용이 추진되지 않았다는 점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한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마다 수립·시행하는 ‘제4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2020.~2024.)’을 살펴보면, 학교폭력에 대해 우범소년 송치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촉법소년 연령 하향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다. 이는 우범소년 규정을 폐지하겠다는 ‘제2차 아동정책기본계획’과 모순되는 추진 계획이자, 촉법소년 연령 하향은 유엔아동권리위원회로부터 대한민국이 받은 권고와 정면으로 반하는 계획이기도 하다.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8.~2022.)’의 경우에는, 아동사범체계와 청소년지원체계를 연계하려는 방안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 “비행청소년 재범 예방 및 회복 지원”을 위해 비행예방 회복 지원프로그램을 강화하고, 보호처분을 받은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추진계획을 밝히고 있다. 하지만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가 있어도 보호를 받지 못하는 소년범청소년의 안전한 보호 및 사회복귀를 위한 자립 지원”과 같이 추상적인 추진계획에 대한 언급만 있을 뿐, 계획을 실제로 현장에서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이 부재하다는 문제가 있다. 관련 추진계획이 공허한 ‘계획’에만 그치지 않도록, 계획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 촘촘하게 모니터링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7) 법무부, 소년법개정시안(공청회자료), (2007), 2., 김두상, “소년법상 우범소년 규정의 개선과 우범소년에 대한 법교육에 관한 고찰”, 법학연구 제25권 제3호, (2017), 4.에서 재인용

이와 같이 정부가 발표한 정책을 살펴보았을 때, ‘관계부처 합동’ 이름으로 발표하는 정책임에도 아동사법체계가 아동정책 및 청소년정책, 교육정책 등과 단절, 괴리되어 추진되어 왔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무엇보다 아동사법의 대상이 되는 아동은 아동으로서 기본적 권리를 마땅히 보장받아야 하며, 그들이 처한 특수한 상황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조금 더 특별한 보호조치가 필요한 ‘아동권리의 주체’이다.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주체라는 것은, 아동권리 보장을 위한 아동사법 전반에 관련된 종사자 등 성인 이해관계자들의 보다 민감한 아동인권 감수성과 이해, 실천을 요청하는 것이다. 정부 정책 전반에 ‘아동, 아동인권’에 대한 관점이 부재한 현실을 알 수 있다.

나. ‘우범소년’ 관련 제20대 및 제21대 국회 법안에 대한 검토

제20대(2016.~2020.), 제21대(2020.~2024.) 국회에서 발의된 우범소년 관련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20대 국회의 경우, 백혜련의원, 권미혁의원, 김상희의원 대표발의안은 모두 우범소년을 규정한 제4조 제1항 제3호를 삭제하거나 그 범위를 축소하는 방향을 담고 있다. 반면, 김정재의원 대표발의안은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한 자만을 처벌하고 있는 「청소년보호법」을 악용하는 아동을 방지하고자 우범사유를 오히려 확대하고 있는데, 이는 아동(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다는 소년법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⁸⁾ 21대 국회의 경우 우범소년 규정 전체를 삭제하는 법안(이규민의원 대표발의안)이 발의되었다.

8)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 허병조, 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3902호)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2020. 3.), 3-4.

[우범소년 관련 국회 발의 현황(2021. 2. 24. 기준)]

국회	대표발의자 (의안번호)	발의일	주요내용
20대	백혜련의원 (제5857호)	2017. 2. 28.	제4조 제1항 제3호 나목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는 것’ 및 같은 호 다목 ‘유해환경에 접하는’ 부분을 삭제, 같은 호 가목 ‘불안감’의 의미에 “위력을 행사해” 추가
	권미혁의원 (제6246호)	2017. 3. 17.	우범소년 규정(제4조 제1항 제3호) 삭제
	김상희의원 (제6264호)	2017. 3. 17.	우범소년 규정 삭제하는 대신, 그 대상을 세분화하여 「아동복지법」 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를 받도록 함
	김정재의원 (제23902호)	2019. 11. 19.	청소년이 술 판매자만 처벌하는 점을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우범소년 사유에 “술을 구매하거나 마시는 성벽이 있는 것”을 추가 (제4조 제1항 제3호 라목 추가)
21대	이규민의원 (제7406호)	2021. 1. 15.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소년보호재판을 받는 우범소년 규정(제4조 제1항 제3호) 삭제

2 아동사법제도의 이념과 입법취지

우범소년 규정을 아동 권리에 기반해 검토하기 위해서는 아동사법제도를 바라보는 ‘관점’, 즉, 아동사법제도가 왜 성인과 달리 특별하게 고안된 것인지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한다.

소년법은 1958. 7. 24. 제정되었다. 당시 제정이유로 “반사회성 있는 소년에 대하여 그 환경의 조정과 성행의 교정에 관한 보호처분을 행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행함으로써 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기하려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헌법재판소 또한 “소년보호란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기 위하여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에 대하여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행함으로써 성행을 교정하고 환경을 조정하여 소년을 교화하고 그 범죄적 위험성을 제거하여 반사회성을 예방하려는 일련의 활동을 말하고, 보호처분이란 소년보호의 이념 아래 비행소년의 환경조정 및 품행교정을 목적으로 하는 조치”라고 설명하였다 (헌법재판소 2015. 12. 23. 선고 2014헌마768 결정). 또한, 소년법상 항고권에 피해자 측이

포함되지 않는 것이 평등권을 침해하는 지가 문제된 사건에서는 “소년심판은 형사소송절차와는 달리 소년에 대한 후견적 입장에서 소년의 환경조정과 품행교정을 위한 보호처분을 하기 위한 심문절차이며, 보호처분을 함에 있어 범행의 내용도 참작하지만 주로 소년의 환경과 개인적 특성을 근거로 소년의 개선과 교화에 부합하는 처분을 부과하게 되므로 일반 형벌의 부과와는 차이가 있다.”라는 입장을 취하였다(헌법재판소 2012. 7. 26. 선고 2011헌마232 결정).

소년은 성장과정에 있고 소년비행은 성인범죄에 비해 상습성의 정도가 약하여 개선가능성이 크다는 점 등을 이유로 소년비행에 대하여 일반적인 형사절차와 병행하거나 독립하여 특별한 처리절차를 두는 것이 세계적 추세이며, 우리나라도 이러한 경향에 따라 소년과 소년비행의 특수성을 고려해 소년법을 두어 소년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보호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⁹⁾

다시 말해, 아동사법제도는 발달과정에 있는 아동의 특수성에 대한 이해를 전제로 아동을 위해 특별히 고안된 형사사법체계이며, 소년법의 주요 목적은 사회복귀(rehabilitation)와 회복(restoration) 내지 사회재적응(reintegration)이다.¹⁰⁾ 소년법은 일정한 연령층의 소년을 대상으로 하며, 성인형법과 구별되는 절차와 처분을 통해 범죄소년의 교육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행위자형법이자 교육형법으로 파악될 수도 있다.¹¹⁾ 소년보호는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필연적으로 복지적·행정적 기능을 갖게 되면서, 동시에 강제조치를 수반하므로 사법적 기능을 아울러 가지는데, 양 기능은 보호절차의 전 과정을 통해 병렬적으로 균형있게 작용하여야 한다.¹²⁾

9) 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소년, (2014), 3-4.

10) 국가인권위원회, 아동·청소년 인권보장을 위한 소년사법제도 개선 연구, 연구용역보고서, (2018), 7-8. 유엔 인권최고대표 사무소 (UN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국제인권법과 사법, 국제인권법연구회, (2014), 505; ‘유엔아동권리협약 제40조 (1); 김경태, “소년사법제도의 개선방안 연구”, 경찰학논총 12(4), (2017), 162; 박호현·김중호, “소년법 개정논의에 대한 고찰-소년사법의 보호이념 강화를 중심으로-”, 동아법학 78, (2018), 2-3; 현소혜, “국제적 기준에 비추어 본 우리나라의 소년사법 제도”, 가족법연구 30(2), (2016), 217. 참고

11) 배종대, “형법의 목적과 소년형벌의 효율성 검토, 청소년범죄연구 제4집, (1986), 20., 배종대, 형사정책, (2014), 498.에서 재인용

12) 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소년, (2014), 3-4.

이와 같이 소년법은 범죄를 행한 반사회성 있는 아동의 회복과 사회복귀를 목적으로 보호처분 및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한 조치를 통해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기하고자 제정된 법(소년법 제1조)이라는 점을 기초로 우범소년 제도를 검토해야 한다.

3 우범소년 관련 현행 법제 현황

가. 대한민국헌법

「대한민국헌법」(이하 ‘헌법’)에 따르면, 아동 또한 기본권의 주체로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을 추구할 권리, 인격권,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제10조, 제12조 등). 이러한 아동의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필요하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헌법 제37조 제2항). 우범소년 규정도 예외는 아니다. 또한 헌법 제12조 제1항과 제13조 제1항은 죄형법정주의를 선언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과외교습을 금지한 사건¹³⁾과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극장 설치 금지사건¹⁴⁾에서 “아동은 부모와 국가에 의한 교육·보호의 단순한 대상이 아닌 독자적인 인격체이며, 그의 인격권은 성인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존엄성 및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헌법 제10조에 의하여 보호된다.”라고 판시했으며,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원의 수업거부로 인한 손해배상사건¹⁵⁾에서도 “학생은 부모와 국가에 의한 단순한 대상이 아니라 독자적인 인격체로서 국가의 교육권한과 부모의 교육권 범주 내에서 자신의 교육에 관한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아동의 기본권 주체성을 확인했다.¹⁶⁾

13) 헌법재판소 2000. 4. 27. 선고 98헌가16, 98헌마429(병합) 결정.

14) 헌법재판소 2004. 5. 27. 선고 2003헌가1, 2004헌가4(병합) 결정.

15)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5다25298판결.

16) 정기상·오서현, 아동보호법론, 유로, (2019), 26-27.

한편 헌법 제10조에 따라 아동을 포함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의 원칙, 차별금지 원칙에 따라 연령이 어리다는 이유로 성인과 달리 취급받아서 안 되며, 범죄를 행한 것과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는 사유는 다르게 취급되어야 한다.

나. 소년법

소년법은 제4조 제1항에서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할 수 있는 소년을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다. 죄를 범한 14세 이상 19세 미만인 아동을 강학상 '범죄소년'으로 부르며 보호처분과 형사처벌이 모두 가능하다.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아동을 '촉법소년'이라 하며, 가출 등의 사유가 있고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 19세 미만인 아동을 '우범소년'이라 한다.

구분	대상	연령	소년법 관련 조항
범죄소년	죄를 '범한' 소년	14세 이상 19세 미만	제4조 제1항 제1호
촉법소년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소년	10세 이상 14세 미만	제4조 제1항 제2호
우범소년	아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고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소년 가.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性癖)이 있는 것 나.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는 것 다.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는 것	10세 이상 19세 미만	제4조 제1항 제3호

이 때, 촉법소년 및 우범소년의 경우 경찰서장이 직접 관할 소년부에 송치할 수 있고(법 제4조 제2항), 보호자, 학교·사회복지시설·보호관찰소의 장은 범죄소년·촉법소년·우범소년을 발견한 경우 소년부에 통고할 수 있다(법 제4조 제3항).

즉,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거나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이 있는 것 등 성인이라면 죄가 되지 않는 사유가 있고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인 아동은 소년보호재판을 받을 수 있다. 소년부로 통고 내지 송치된 우범소년은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될 수 있으며, 12세 이상의 경우 최대 2년 장기 소년원처분까지 받을 수 있다(10세는 최대 6개월 소년원 송치 가능).

다. 유엔아동권리협약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헌법 제6조 제1항). 대한민국이 1991. 12. 가입·비준한 유엔「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이하 '유엔아동권리협약')은 불법적·자의적으로 자유를 박탈당하지 않을 아동의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제37조). 아동의 체포, 구금 및 수감은 법률에 따라 오직 최후의 수단으로서 최단기간 동안만 행해져야 한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우범소년 규정이 자의적으로 아동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은 아닌지, 우범소년 규정에 따른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6호시설처분, 소년원 처분 등 구금적 처우가 오로지 '최후'의 수단으로서 적절한 '최단'기간 동안만 이루어지고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

제37조
당사국은 다음의 사항을 보장하여야 한다.
가. 어떠한 아동도 고문 또는 기타 잔혹하거나 비인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을 받지 아니한다. 사형 또는 석방의 가능성이 없는 종신형은 18세미만의 사람이 범한 범죄에 대하여 과하여져서는 아니된다.
나. 어떠한 아동도 위법적 또는 자의적으로 자유를 박탈당하지 아니 한다. 아동의 체포, 억류 또는 구금은 법률에 따라 행하여져야 하며, 오직 최후의 수단으로서 또한 적절한 최단기간 동안만 사용되어야 한다.
다. 자유를 박탈당한 모든 아동은 인도주의와 인간 고유의 존엄성에 대한 존중에 입각하여 그리고 그들의 연령상의 필요를 고려하여 처우되어야 한다. 특히 자유를 박탈당한 모든 아동은, 성인으로 부터 격리되지 아니하는 것이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합치된다고 생각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인으로 부터 격리되어야 하며,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신과 방문을 통하여 자기 가족과의 접촉을 유지할 권리를 가진다.
라. 자유를 박탈당한 모든 아동은 법률적 및 기타 적절한 구조에 신속하게 접근할 권리를 가짐은 물론 법원이나 기타 권한 있고 독립적이며 공정한 당국 약에서 자신에 대한 자유박탈의 합법성에 이의를 제기하고 이러한 소송에 대하여 신속한 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4 우범소년 규정의 문제점

가. 비차별원칙 위반 등: 국제사회의 반복된 ‘지위비행’ 규정 폐지 권고

우범소년 규정 폐지가 시급하게 필요한 이유는 이 규정의 존재 자체만으로 성인에게 죄가 되지 않는 행위를 낙인찍어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함으로써 ‘회복과 사회복귀’를 오히려 저해하면서 아동사법의 이념을 몰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단지 ‘죄를 범할 우려’만으로 사법적 처분을 부과하는 것을 연령을 이유로 하는 차별적 처우라고 볼 수 있다.

2019. 10.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제5-6차 대한민국 심의에 따른 최종견해에서 우범소년 규정을 삭제할 것을 명시적으로 권고했다. 또한 구금은 최후의 수단으로 최소한의 기간만 적용하고, 중단을 목적으로 구금을 정기적으로 검토할 것도 요청했다.¹⁷⁾

47. 위원회는 당사국에 다음을 촉구한다.

- (e) “우범소년”에 관한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3호를 폐지할 것
- (g) 소년법에 구금의 명확한 근거를 마련할 것; 구금은 최후의 수단으로, 최소한의 기간만 사용할 것; 구금은 중단을 목적으로 정기적으로 검토할 것; “보호처분” 기간 및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기간이 최종 형기에 산입되도록 보장할 것; 구금에 항소할 권리 및 부당한 구금에 대한 배상권을 보장할 것

47. The Committee urges the State party to:

- (e) Repeal article 4 (1) (3) of the Juvenile Act on “crime-prone juveniles
- (g) Establish clear grounds for detention in the Juvenile Act, use detention as a measure of last resort and for the shortest period of time, ensure that detention is reviewed on a regular basis with a view to its withdrawal, ensure that the period under the “protective disposition” and the period of “entrustment to the juvenile classification” are counted towards the final sentence, and establish and ensure the right to appeal an order of detention and the right to compensation for unlawful detention;”

1990. 12. 14. 유엔총회에서 채택한 「소년비행의 방지에 관한 유엔지침(리야드 가이드라인)」은 소년에 대하여 ‘일탈’(deviant), ‘비행’(delinquent), ‘우범’(pre-delinquent)이라고 이름을

17) CRC/C/KOR/5-6, para. 47.

붙이는 것이 결국 범죄로 진행하게 하는 효과가 있음을 지적하며 아동의 행동에 대하여 범죄시하고 형벌화하는 것을 삼갈 것을 기본원칙의 하나로 채택하였다.¹⁸⁾ 그러면서 아동이 불필요하게 낙인찍히고 피해를 입거나 범죄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 성인이 했을 경우 범죄로 인식되지도 않고 처벌받지도 않는 행위라면 아동이 해도 범죄가 되지 않고 처벌되지 않도록 법률이 제·개정되어야함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¹⁹⁾ 한국의 자유박탈아동 실태조사 연구(2020)에서도 우범소년 통고 규정으로 인해 자유박탈을 경험한 아동 사례와 함께 우범소년 규정 폐지가 제도개선방안으로 제시되었다.²⁰⁾

유엔아동권리위원회 또한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에 관한 일반논평 제10호(2007), 제24호(2019)를 통해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우범소년 규정, 소위 ‘지위비행(status offences)’ 규정을 철폐할 것을 반복하여 권고하고 있다.²¹⁾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아동사법체계에서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일반논평 제24호(2019)

IV. 종합적인 아동사법 정책의 핵심 요소

A. 형사책임의 최저연령보다 어린 아동에 대한 조기개입 등 아동 범죄행위의 예방

12.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접근에는 학교 결석, 가출, 구걸, 또는 (사유지의) 무단 침입과 같이 그 근본적인 원인을 빈곤, 노숙, 또는 가정 폭력에서 찾을 수 있는 경미한 범죄를 비범죄화하여, 아동의 아동사법체계로의 유입을 막는 것이 포함된다. 성착취의 피해 아동, 그리고 서로 합의된 성관계를 가진 청소년들이 형사처벌되는 경우도 있다. 지위범죄(지위비행)라고도 알려진 이러한 행위는 성인이 저지르면 범죄로 간주되지 않는다. 위원회는 당사국이 그들의 법령에서 (이러한) 지위범죄를 철폐할 것을 촉구한다.

General comment No. 24 (2019) on children’s rights in the child justice system(2019)

IV. Core elements of a comprehensive child justice policy

A. Prevention of child offending, including early intervention directed at children below the minimum age of criminal responsibility

12. A systemic approach to prevention also includes closing pathways into the child justice system through the decriminalization of minor offences such as school absence, running away, begging or trespassing, which often are the result of poverty, homelessness or family violence. Child victims of sexual exploitation and adolescents who engage with one another in consensual sexual acts are also sometimes criminalized. These acts, also known as status offences, are not considered crimes if committed by adults. The Committee urges States parties to remove status offences from their statutes.

18) A/RES/45/112, para. 5., 김지혜, “가출의 비범죄화 - 소년법상 가출규정과 가정밖 청소년의 인권-”, 소년보호연구 제23호, (2013), 42.
 19) A/RES/45/112, para. 56., 같은 취지로, 위 논문 42.
 20) 자유박탈아동에 대한 한국 실무그룹, 한국의 자유박탈아동 실태조사 -유엔 국제연구를 중심으로-, (2020), 39, 45. 참고.
 21) CRC/C/GC/24, para. 12., CRC/C/GC/10, para. 8.

소년사법에서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일반논평 제10호(2007)

III. 소년사법: 종합정책의 주요 원칙

비차별(제2조)

8. 형법에서 종종 심리적 또는 사회경제적 문제의 결과로 야기된 아동의 행동상의 문제, 가령 방랑, 무단결석, 가출 등을 범죄로 금지하는 조항을 포함하는 경우는 매우 흔한 일이다. 소녀와 길거리 아동이 종종 그러한 범죄의 희생자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특히 우려할만한 사항이다. 지위비행으로도 알려진 이와 같은 행동을 성인이 저지른 경우에는 범죄가 되지 않는다. 위원회는 법적 차원에서 아동과 성인에 대한 동등한 대우를 확립하기 위해 지위비행에 관한 조항을 폐지할 것을 당사국에 권고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위원회는 리야드 가이드라인 제56조를 언급한다. “청소년과 관련한 낙인찍기, 희생양 만들기, 범인 취급을 방지하기 위해, 성인이 행할 경우에 범죄로 간주하지 않거나 처벌하지 않는 행위를 청소년이 행할 경우에도 범죄로 간주하지 않거나 처벌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해 법률이 제정되어야 한다.”

General Comment No. 10 (2007) Children's rights in juvenile justice

III. JUVENILE JUSTICE: THE LEADING PRINCIPLES OF A COMPREHENSIVE POLICY

Non-discrimination (art. 2)

It is quite common that criminal codes contain provisions criminalizing behavioural problems of children, such as vagrancy, truancy, runaways and other acts, which often are the result of psychological or socio-economic problems. It is particularly a matter of concern that girls and street children are often victims of this criminalization. These acts, also known as Status Offences, are not considered to be such if committed by adults.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s parties abolish the provisions on status offences in order to establish an equal treatment under the law for children and adults. In this regard, the Committee also refers to article 56 of the Riyadh Guidelines which reads: “In order to prevent further stigmatization, victimization and criminalization of young persons, legislation should be enacted to ensure that any conduct not considered an offence or not penalized if committed by an adult is not considered an offence and not penalized if committed by a young person.”

유엔사무총장이 주도하는 아동권리와 관련된 세 번째 연구인 ‘아동의 자유박탈에 대한 국제연구 (Global Study on Children Deprived of Liberty)’에서 정의하는 “자유박탈”이란, 모든 형태의 구금, 수감 또는 사법적, 행정적, 기타 권한 있는 기관의 명령에 따라 자유의지로 떠날 수 없는 공공·민간의 구금적 환경에 배치되는 것을 말한다.²²⁾ 2019. 7. 자유가 박탈된 아동에 대한 유엔 국제연구 독립전문가가 유엔 사무총장에 제출한 이 보고서에도 “지위비행” 규정 폐지가 권고되었다. 국가는 종종 예방 대신 과도한 형사범죄화를 주도하는 억압적이고 처벌적인 정책에 의존하였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아동의 전형적인 행동을 범죄시하는 것을 소위 “지위비행”이라고 하며, 아동은 무단결석, 가출(집에서 탈출하는 것), 반항, 미성년자의 음주, 10대 사이의 동의에 따른 성적 활동, 전통과 도덕에 “분열을 일으키는” 행동과 습관을 이유로 기소되고 구금되는 문제가 제시되었다.²³⁾

국가인권위원회도 2016. 11. 24. 현행 소년법상 소년보호사건의 심리대상에 ‘정당한 이유 없는 가출’을 포함하고 있는 것은 많은 경우 가출이 가정폭력, 학대 등의 가족상황에서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가출 그 자체를 ‘반사회적 행동’으로 낙인찍어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이며, ‘가출청소년’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로 인하여 이들이 사회에서 배제되고 범죄행동에 노출될 가능성을 높인다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소년법 제1호 제3호 나목의 규정을 삭제하고, 나아가 위 조항 제3호 우범소년 규정 전체를 삭제하는 것을 검토하라고 권고하였다.²⁴⁾ 2020. 12. 30. 법무부 소년보호혁신위원회도 같은 취지로 우범소년 규정 폐지를 권고했다.²⁵⁾

나. 명확성의 원칙 등 죄형법정주의 위반

소년법은 사법법(司法法)으로 보호처분을 부과하며, 특별형사사법으로 분류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형사법의 지배이념인 죄형법정주의, 적법절차의 원리 및 무죄추정의 원리가 그대로 적용된다.²⁶⁾ 그 가운데 헌법 제12조 및 제13조를 통하여 보장되고 있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은 범죄와 형벌이 법률로 정하여져야 함을 의미하며, 이러한 죄형법정주의에서 파생되는 명확성의 원칙은 법률이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가 무엇이며 그에 대한 형벌이 어떠한 것인지를 누구나 예견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자신의 행위를 결정할 수 있도록 구성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헌법재판소 2000. 6. 29. 선고 98헌가10결정 등).

우범사유로 제시되어 있는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이 있는 것’,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는 것’,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는 것’은 추상적이고 불명확하다.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가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소년부에 통고되거나 소년부에 송치될 우려가 있다. 심지어 보호자 또는

22) ‘자유가 박탈된 아동에 대한 유엔 국제연구를 주도한 독립전문가의 보고서(A/74/136)’, para. 6.

23) A/74/136, para. 43.

24) 2016. 11. 24. 국가인권위원회, “가정 밖 청소년 인권보호 정책개선 권고” 참조

25) 2020. 12. 30. 법률신문, “죄를 범할 우려만으로 보호처분은 인권침해... ‘우범소년’ 규정 폐지해야”

26) 현소혜, “국제적 기준에 비추어 본 우리나라의 소년사법제도”, 233, 가족법연구 제30권 제2호, (2016) 참조; 최영승, “소년보호사건에 있어서 적법절차의 구현”, 소년보호연구 제24호, (2014), 337. 참조; 같은 논문 각주8) 및9) 재인용; 한국소년법학회편, 소년법연구, 세창출판사, (2006), 28., 조준현, “소년사법의 이념과 원리에 관한 소고”, 소년보호연구 창간호, (1999), 287.

학교·사회복지시설·보호관찰소의 장이 이러한 형사사법절차로 통고할 수 있는 판단의 주체라는 점에서 자의적인 판단이 개입될 가능성이 더 크다. 죄를 범하거나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지 않았음에도 단지 할 ‘우려’가 있다는 상상만으로 사법절차인 소년보호사건의 대상으로 규정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취지에 반한다. 나아가 죄형법정주의에 따른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화시키는 것이기도 하다.²⁷⁾

다. 시설보호아동에 대한 차별적이고 자의적인 처우

시설의 장이 시설에서 소위 ‘관리’하거나 ‘통제’하기 어려운 아동을 징계하거나 시설 밖으로 내보내기 위해 우범소년 통고 규정을 악용하고 있는 사례가 반복하여 확인되고 있다. 2018년 국가인권위원회 연구용역보고서에 따르면, 아동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아동양육시설의 장이 통고하여 소년분류심사원, 소년보호시설(6호시설), 소년원에 구금되는 사례가 다수 보고되었다.²⁸⁾ 아동양육시설에 거주하던 아동이 어떠한 정보도 제공받지 못한 채 재판을 받아 6호 시설처분을 받거나, 정신 차리라고 반성하라는 이유로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어 6호 시설처분을 받은 사례 등이 있다. 관련 사례를 몇 가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참여자 20] (법원에 아동양육시설) 원장님이랑 갔어요. 그냥 처음에 갈 때 있다고 해서 따라갔는데, 가면서 (어디 가는지) 이야기해 주셨어요. (...) 처음에 저는 심사원 갔다가 나갈 줄 알았는데, (재판에서) 6호시설 ***에 들어가야 된다고 해서 그 때는 울었어요. 6개월 가는지도 몰랐고, 가서 알았어요. 판사님은 “OO는 6호 ***처분합니다.”라고만 했거든요.²⁹⁾

27) 법무부 소년보호혁신위원회 제5차 「우범소년 규정 폐지」 권고, (2020), 참고

28) 국가인권위원회 연구용역, 아동·청소년 인권보장을 위한 소년사법제도 개선 연구, (2018), 120-128, 283.

29) 위 국가인권위원회 연구용역(2018), 127.

[참여자 4] (아동양육시설에서 생활하던 중) 애들이 살짝 겁먹고 정신 차리라고 (6호 시설에) 2주 이렇게도 보내거든요? 체험으로 반성하는 기분으로 갔다고 오라고. 갔는데, 이제 거기서 원래 2주만 있고, 나오는 날이 12월 14일이었나? 아직도 기억나. 12월 14일이 원래 나오는 날이었는데 안 오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 그냥 거기서 2주 더 있다가 심사원으로 갔죠. 4주 있다가 갑자기 스타렉스(법무부 호송차량) 한 대가 오더라구요. (...) 제가 울고불고 따졌죠. (내가 통고로) 왜 가냐고. (...) 막 (아동양육시설 선생님들이) 제가 한 행동에 대해서 자기가 더 잘 알지 않나면서 그러던데요?³⁰⁾

사실상이 시설 거주 아동에 대한 징계조치로 우범소년 통고제도가 오·남용되는 실태를 유추할 수 있다. 이는 보호환경이 열악한 아동양육시설에서 생활하는 아동이 상대적으로 손쉽게 ‘자유박탈적 처분’이 적용되는 것이자, 사법절차에 따른 ‘처벌’을 받는 것이며, 아동의 가정환경에 따른 차별이라 할 수 있다.

라. 지위비행으로 인한 자유박탈의 과도한 장기화

소년부로 통고 내지 송치된 우범소년은 소년분류심사원에 구금될 수 있고, 최대 2년 장기 소년원처분까지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신체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침해하는 문제가 있다(소년법 제32조).

추상적이고 불명확한 우범소년 규정으로 인해, 더 손쉽게 아동의 자유가 박탈되고, 구금이 장기화되고 있는 것이다. 서울소년분류심사원의 우범소년 실태분석에 따르면, 2020. 1. 1.부터 10. 31.까지 우범사유로 위탁된 267명 중 전체 80.5%에 해당하는 215명이 보호관찰 처분을 받았으며, 6호에서 10호(보호관찰 병합 포함)처분에 이르는 구금 처분 비율은 129명으로 50%를 차지하고 있었다.³⁰⁾ 또한 2015년 기준 우범소년에 대한 제6호 처분(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위탁) 비율이 21.2%로, 전체 소년보호사건 중 제6호 시설처분 비율인 3.6%보다 약 6배 가량이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³¹⁾

30) 위 국가인권위원회 연구용역(2018), 128.

31) 법무부 소년보호혁신위원회 제5차 「우범소년 규정 폐지」 권고, (2020).

32)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 정연호,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2017. 9.), 9. (법원 사법연감 자료)

마. 청소년성보호법상 “대상아동·청소년규정” 삭제 입법취지와 충돌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이후, 2020. 5. 성매수범죄에 이용당한 아동·청소년이 범죄자로 취급되어 소년보호재판을 받았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대상아동·청소년”규정이 삭제되었다. 하지만 성착취범죄에 이용당하는 아동을 ‘비행청소년’, 나아가 ‘범죄자’로 보는 시각과 관점이 여전히 존재하는 한, 현장은 달라지지 않는다. 성매매범죄에 이용당하거나 성범죄 위협에 처한 아동을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거나 술을 마시고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고 앞으로 법에 저촉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우범소년 규정으로 소년보호재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성착취범죄에 이용당한 아동은 모두 피해자이며, 범죄자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대상아동·청소년” 개정의 입법취지를 이행하기 위해서라도 우범소년 규정의 삭제는 시급하다.

바. 교육현장에서 우범소년 통고제도의 오·남용

C는 조퇴를 요구, 수시 흡연, 교사에게 언행을 불손하게 하여 수업분위기를 흐림, 무리지어 다니며 면학분위기를 무너뜨림, 오후에 등교하는 등 교칙을 준수하지 않음, 교무실에서 소동을 피움, 이성교제를 하면서 집착적으로 행동하고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욕설을 하고 공포분위기를 만들, 담임교사에게 화가 나면 부수고 싶다는 분노조절의 어려움을 이야기함, 여학생에게 막말이나 욕설을 하면서 괴롭히는 등 다수의 학생들이 C로부터 공포심을 느끼고 교사들이 상당한 부담과 압박감을 호소하고 있으며, 수업 중의 불순한 태도로 학교가 기본생활 지도가 어려움.³³⁾

C가 재학하고 있는 학교의 장이 C를 통고한 사유를 제시한 것이다. 우범소년 사유로 학교의 장이 소년부에 통고한 사례이다. 과연 학교는 교육적 해결이 불가능한 중대한 사유로 C를 법원에 통고한 것인지 촘촘하게 물어야 한다.

33) 발제자가 실제로 수행한 사건을 요약하여 제시하였다.

학교는 교육 현장이라는 점에서, 중대한 범죄의 수준이 아닌 이상 회복적 절차, 교육적 해결을 우선시하고 사법적 처리는 되도록 지양해야 할 것이다. 경미한 학교폭력의 경우 학교의 장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2019. 8. 개정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도 같은 취지로 해석된다. 경미한 수준의 학교폭력 사안인 경우에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심의대상이 되어 교육적 해결이 곤란한 상황 등이 고려된 개정이었다.

하지만 현행 소년법상 우범소년 통고제도에 따라 학교의 장은 경미한 수준의 학교폭력도 얼마든지 관할 소년부에 통고할 수 있다(법 제4조 제3항). ‘제4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2020.~2024.)’에 따르면, 학교폭력에 대해 우범소년 송치제도를 적극 활용할겠다는 점을 밝히고 있는데, 학교폭력 사건에서 학교장의 통고로 우범소년 통고제도가 오·남용되는 사례가 현장에서 계속 보고되고 있다. 중대한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에는 형사사법절차로 회부하면 된다. 경미한 수준의 학교폭력내지 학생지도의 어려움 등 학교에서 교육적으로 해결할 수 있고 해결해야 할 사안이 소년보호절차로 처리되지 않기 위해 통고제도는 삭제될 필요가 있다.

사. 헌법상 비례원칙 위반; 사법적 제재가 아닌, 복지적 개입과 지원 필요

추상적이고 불명확한 사유를 근거로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형사적 제재인 보호처분을 부과하는 것은 헌법상 비례원칙에도 위반된다. 형벌법령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지 않은 우범소년을 공식적인 사법처리절차의 하나인 소년보호절차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소년사범의 과잉개입이며,³⁴⁾ 우범소년에 대해서는 사법적 보호처분보다는 복지적 행정처분이라는 더 적절하며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는 효과적인 수단이 있다. 우범소년 규정은 조기에 개입하여 범죄를 예방하겠다는 입법취지에 비해, 시설이나 소년원 송치 등 자유가 박탈되는 처분에 이를 수 있다는 점에서 지나치게 가혹한 입법적 조치로서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도 어긋난다.

34) 같은 취지로, 오영근·최병자, “소년사건처리절차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5), 63., 장영민, “소년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21세기 형사사법개혁의 방향과 대국민 법률서비스 개선방안’, (2004), 174., 최종식, “소년법상 보호처분에 관한 연구”, 강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6), 113. 원혜숙, “소년비행 예방을 위한 입법정책 -우범소년에 대한 규정을 중심으로-”, 형사정책 제18권 제2호, (2006), 379.에서 재인용

우범사유 중 ‘가출’을 보더라도 많은 경우 ‘가출’이 가정폭력, 학대 등의 가족상황에서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아동의 피해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은 문제이며, 오히려 ‘반사회적 행동’으로 낙인찍어 이들이 사회에서 배제되고 범죄행동에 노출될 가능성을 높일 뿐이다.³⁵⁾

아동사법제도를 경험하는 적지 않은 아동이 가정 내 위기상황일 가능성이 높는데, 문제의 원인은 아동의 행위가 아니라, 위기상황을 발생시킨 가정에서 찾아야 한다. 이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수사해야 할 경찰의 전문성이 요청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그런데 우범소년 규정은 아동의 특정행위에 책임을 묻고, 심지어 보호자가 통고할 수 있도록 하여 학대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국가책임 강화의 방향성에도 맞지 않는다.

「청소년보호법」에 따르면, 청소년은 주류나 담배 등 청소년유해약물, 청소년유해업소나 청소년유해매체물, 폭력 및 학대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자이고, 오히려 규제·제재를 받거나 책무를 지는 자는 이러한 유해환경 등을 제공한 성인, 가정, 사회, 국가에 있다. 술을 마시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다는 이유로 아동에게 사법적 제재를 부과하는 우범소년 규정은 이러한 「청소년보호법」과도 충돌하는 문제가 있다.

우범소년이 규율하는 아동 관련 문제는 사법체계가 아닌 복지적 개입으로 해결해야 할 사항이다. 법무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교육부, 경찰청 및 각 지방자치단체 등이 협력을 강화하고 보호가 필요한 아동, 가정 밖 청소년 등을 위한 지원과 보호대책을 실효적으로 적용해야 할 문제이다.³⁶⁾

35) 국가인권위원회, 가정 밖 청소년 인권보호 정책개선 권고, (2016. 11.)

36) 법무부 소년보호혁신위원회 제5차 「우범소년 규정 폐지」 권고, (2020), 참고. 비슷한 취지로, 우범소년은 소년법이 아닌 청소년보호법에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로, 김두상, (2017), 9.

바. 객관적 통계 부재

정책은 증거에 기반하여 수립되어야 한다. 아동권리에 기반한 아동사법제도의 구현은 구체적인 현황에 대한 통계자료 수집, 즉 객관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우범소년만 하더라도 구체적인 정확한 통계조차 부재하고,³⁷⁾ 통고사건의 규모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다.³⁸⁾ 대검찰청의 ‘범죄분석’, 법무연수원의 ‘범죄백서’, 법무부의 ‘법무연감’, 법원행정처의 ‘사법연감’ 등의 자료가 있다. 하지만 경찰단계에서 검찰을 거치지 않고 바로 소년부(법원)로 송치되거나 경찰을 거치지 않고 바로 시설장 등에 의해 소년부(법원)로 통고되는 등 아동사법절차의 독특한 처리절차를 고려해 볼 때, 검찰과 법원이 작성한 각 자료마다 집계 대상이 다를 수 있다. 각 자료가 가지는 한계를 고려하지 못한 채 이러한 자료들은 우리나라 소년범죄의 전체 규모를 보여주는 통계로 잘못 활용되어 왔다.³⁹⁾

서울소년분류심사원의 우범소년 실태분석에 따르면, 2020. 1. 1.부터 10. 31.까지 입원한 우범소년 267명 중 ‘우범성’만으로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인원이 50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⁴⁰⁾ “다만, 해당 자료는 소년분류심사원을 대상으로 수기로 파악한 자료이며, 전체 우범소년에 대한 통계자료는 부재”하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 또한 당사국에 아동이 저지른 범죄의 숫자와 성격, 미결구금의 사용 및 평균 기간, 사법 절차 이외의 조치에 의해 처리된 아동의 숫자(다이버전), 유죄판결을 받은 아동의 숫자, 그들에게 부여된 제재의 성격과 자유를 박탈당한 아동의 숫자 등과 같은 분리된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⁴¹⁾

따라서 우범소년 및 통고제도의 현재를 진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통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37) 같은 취지로 김두상, (2017), 2., 법무부 소년보호혁신위원회 제5차 「우범소년 규정 폐지」 권고, (2020), 참고

38) 최수형 외 20명,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2019),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20), 113.

39) 최수형 외 20명, 112.

40) 법무부 소년보호혁신위원회 제5차 「우범소년 규정 폐지」 권고 참고.

41) CRC/C/GC/24, para. 113.

5 개정방향: 우범소년 및 통고 규정의 삭제 필요

아동에 대한 자유박탈은 아동기의 박탈이다.⁴²⁾ 소년법상 우범소년 규정(제4조 제1항 제3호)은 전부 삭제되어야 한다. 성인에게는 죄가 되지 않는 행위를 낙인찍어 범죄자로 취급하고, 단지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사법적 처우를 부과하는 것은 ‘회복과 사회복귀’라는 아동사법의 이념에도 반하여 그 자체로 아동에 대한 차별적 처우이다. ‘우범’이라 이름을 붙이는 것이 결국 범죄로 진행하게 하는 효과가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고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는 등의 사유는 형사적 제재가 아닌 복지적 개입이 필요한 사유이다. 우범사유 또한 불명확하고 추상적이어서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아동이 사법적 제재를 받게 되는 문제도 있다.

2007. 개정 전 소년법에는 “보호자의 정당한 감독에 복종하지 않는 성벽이 있는 것”이 우범사유의 하나로 제시되었다. 지난 2021. 1. “친권자가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민법」 제915조 징계권 규정이 삭제되었다. 이러한 징계권 삭제를 통해 아동학대를 방지하고 아동 권리 실현을 위한 국가의 책무성이 강화되고 있는 현재, 우범소년 규정의 삭제는 아동의 특정행위를 범죄시하고 낙인화하는 관점을 획기적으로 전환하는 계기도 될 것이다.

이러한 우범소년 규정의 삭제 취지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통고 규정(소년법 제4조 제3항)을 함께 삭제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우범소년 규정이 삭제되더라도 보호자, (사회복지)시설, 학교의 장 등이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소년부에 통고할 수 있다면, 아동을 성인과 달리 취급하지 말고 동등하게 대우하며(성인이라면 이러한 통고제도로 사법절차에 회부되지 않는다),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판단으로 아동의 자유가 박탈되는 것을 막고자 하는 우범소년 삭제의 취지를 제대로 달성하기 어렵게 된다. 시설에서 생활하는 아동이 시설장 통고에 의해 좀 더 쉽게 자유가 박탈되는 문제, 교육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경미한 학교폭력이 학교장에 의해 소년부로 통고되는 문제도 온전히 해결되지 않게 된다. 통고 규정이 삭제되더라도, 수사기관이 수사한 결과 소년보호재판이 적합할 경우 소년부로 송치하고(소년법 제49조 제1항),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경우 경찰서장이 소년부로 송치하는 규정(소년법 제4조 제2항) 등으로 규율하면 충분하다.

아동의 회복과 사회복귀라는 아동사법의 핵심이념은 죄를 범한 아동에 대한 차별과 낙인을 방지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 단지 범죄를 저지를 ‘우려’를 이유로 처벌받은 우범소년 규정은 죄를 범한 아동에 대한 차별과 낙인을 조장·강화한다는 점에서 더욱 폐지되어야 한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가 수행한 ‘청소년의 혐오표현 노출 실태 및 대응방안 연구’에서 전국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청소년 6,0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수집단의 혐오표현 피해 심각성’에 대해 다양한 유형 중에서 “범죄청소년(39.3%)” 집단이 1위를 차지했다.⁴³⁾

아동이라는 이유로 성인과 달리 ‘보호’를 명목으로 불필요한 제재적·후견적 개입을 고려하고 있지는 않은지 검토해야 한다.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등의 우범사유는 아동이 처한 위기상황 혹은 복지적 개입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신호일 가능성이 높다. 아동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 아동의 생존·보호·발달·참여 등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책무가 검토되어야 할 사유이다. 보호가 필요한 아동 혹은 위기상황에 처한 청소년에 대한 복지와 지원을 강화하여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우범소년 규정 삭제는 아동에 대한 자유박탈, 구금은 오직 최후의 수단으로서 최단기간 동안만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을 아동사법 전반에 실천할 수 있는 기회이다.

42) A/74/136

43)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청소년의 혐오표현 노출 실태 및 대응방안 연구”, (2020), 325.

02 발제

우범소년 관련 법 규정 정비 필요성

박병수(국가인권위원회 아동청소년과장)

국회의원 박완주 & CPE 「위기아동 지원방안 마련 연속토론회」 #2

우범소년 관련 법 규정 정비 필요성

박병수(국가인권위원회 아동청소년과장)

「소년법」 제1조는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3호(이하 '우범소년 규정')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거나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이 있는 것 등 성인이라면 죄가 되지 않는 사유가 있고,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인 아동은 소년보호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년법 제4조 제3항에 따르면 우범소년을 발견한 사회복지시설, 학교의 장 등은 이를 관할 소년부에 통고할 수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2015년 시행했던 가정 밖 청소년의 인권상황에 대한 현장모니터링을 통해 파악된 내용을 토대로 정책검토를 수행하고 2016년에 '우범소년 관련 조항 정비'를 포함하는 '가정 밖 청소년 인권보호 정책개선'을 권고하였습니다. 당시 인권위는 소년법상 소년보호사건의 심리대상에 '정당한 이유 없는 가출'을 포함하고 있는 것은 많은 경우 가출이 가정폭력, 학대 등의 가족상황에서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가출 그 자체를 '반사회적 행동'으로 낙인찍어 잠재적 범죄자로 대하는 것이며, '가출청소년'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로 인하여 이들이 사회에서 배제되고 범죄행동에 노출될 가능성을 높인다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소년법 제1호 제3호 나목의 규정을 삭제하고, 나아가 위 조항 제3호 우범소년 규정 전체를 삭제하는 것을 검토하라고 권고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인권위는 2019. 12. 26. 기존의 소년법상 우범소년 관련 규정에 ‘술을 구매하거나 마시는 성벽이 있는 경우’를 신설하려는 당시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우범소년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국제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바람직하지 않으며, 나아가 소년법상 우범소년 규정 자체도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권고를 비롯한 국제인권규범을 고려하여 해당 신설조항에 반대하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인권위가 소년법상의 우범소년 규정을 정비해야 한다고 권고 및 의견표명을 할 때 유엔 인권기준과 우리 정부에 대한 권고 등을 고려하였습니다.

우선, 1990. 12. 14.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소년비행의 방지에 관한 유엔지침 (리야드 가이드라인)」은 소년에 대하여 ‘일탈’(deviant), ‘비행’(delinquent), ‘우범(pre-delinquent)’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것이 결국 범죄로 진행하게 하는 효과가 있음을 지적하며 아동의 행동에 대하여 범죄시하고 형벌화하는 것을 삼갈 것을 기본원칙의 하나로 채택하였으며, 그러면서 성인에게는 죄가 되지 않는 행위를 소년이라고 하여 낙인화하고 범죄시하는 입법이 없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유엔의 이러한 입장은 유엔 아동권리위원회가 아동권리협약의 주요 항목의 의미를 상세히 해석하는 일반논평으로 이어졌습니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일반논평 10호: 청소년 사법에서의 아동의 권리’(2007)을 통해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소위 ‘지위비행(status offences)’ 규정을 철폐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일반논평 24호: 아동사법제도에서 아동의 권리’(2019)를 통해, 학교 결석, 가출, 구걸 또는 무단 침입 등과 같이 빈곤, 노숙 또는 가정 폭력의 결과인 경우가 적지 않은 아동의 경미한 범행들을 비범죄화(decriminalization)하고, 당사국에게 성인이 행하는 경우에는 범죄행위로 간주되지 않는 행위를 아동에 적용하는 법령 조항을 삭제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9. 10.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대한민국 제5-6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에서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우범소년의 구금을 규정하는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 대해 우려하며, 해당 조항을 삭제할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인권위는 소년법상 우범소년 규정이 국제인권규범에 적합하도록 조속히 정비되어 이 규정으로 인해 아동청소년이 부당하게 잠재적 범죄자로 대해 지거나 사회적으로 배제될 수 있는 문제가 해소되길 기대합니다.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상 임 위 원 회

결 정

제 목 가정 밖 청소년 인권보호 정책개선 권고

주 문

국가인권위원회는 가정 밖 청소년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1. 여성가족부장관은,

가. 법정대리인 등의 불비로 인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청소년보호기관으로 하여금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법정대리인 권한을 부여받는 재판절차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등 사법 접근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나. 가정 밖 청소년의 보건·의료 서비스 접근성 제고를 위하여, 건강 특화형 쉼터의 '건강 특화' 기능의 보장, 의료인력 적정 배치, 청소년쉼터 내에 임상심리상담원 배치 및 광역단위의 거점지역에 청소년치료재활센터를 추가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다.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별표 2]의 일시쉼터 종사자 배치기준에 아웃리치 전담요원을 명시하는 한편, 가정 밖 청소년의 특

성과 요구에 기반하여 쉼터 유형을 다양화, 전문화 하고, 나아가 청소년쉼터의 바람직한 운영 방향에 관한 기본원칙을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규정하며, 가정 밖 청소년 밀집지역에 우선적으로 일시쉼터를 증설하고,

라.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17조 [별표 3]의 청소년복지시설 설치·운영 기준에서 침실당 적정 인원 배치 및 일상생활에 관한 시설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청소년보호기관 내 인권침해와 차별 예방을 위한 조치를 강구하고,

마.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기반 마련을 위하여, 아동복지시설 퇴소자에게 제공되는 전세주택 지원 등의 주거지원제도를 이들에게도 적용하고,

바. 인권보장의 측면에서 '가출 청소년' 관련정책이 실행되도록,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6조에서 '가출'이라는 용어를 '가정 밖'으로 대체하고, 그에 따라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 및 보호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2. 교육부장관은,

가. 가정 밖 청소년의 교육권 보장을 위하여, 정부가 교육(지원)청 내에 설치할 계획인 미취학 및 학업중단 학생 관리 전담기구가 고등학생을 포함하여 가정 밖 청소년의 원적교 복교 문제를 다루고 학교의 장이 정당한 이유없이 이들의 복교를 거부할 시 이의제기나 심의 절차를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 가정폭력 등과 같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가정복귀가 어려워 청소년보호기관에서 긴급하게 보호받고 있는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보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학교 출석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3. 보건복지부장관은,

가. 가정 밖 청소년의 보건·의료 서비스 접근성 제고를 위하여, 「의료급

여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하는 수급권자에 “청소년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청소년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을 추가하고,

나. 실종아동 신고의무 규정과 관련하여,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충분한 보호를 위하여, 청소년보호기관에 대해 해당시설에 입소한 청소년과의 관계 형성 및 상황 파악을 위한 최소한의 신고유예 기간을 인정 하는 등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예외 규정을 두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4. 법무부장관은, ‘가출 청소년’에 대한 낙인화를 최소화 하고 이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는 것”을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규정을 삭제하고, 나아가 위 조항 제3호 전체를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이 유

I. 권고의 배경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2015년에 가정 밖 청소년(가출 청소년) 인권 관련 현장의 전문가들과 함께 모니터링(이하 ‘2015년 모니터링’라 한다)을 실시하여 관련정책의 사각지대를 점검하고 인권개선 과제를 도출하였다. 가정의 보살핌 부족이나 학대 등으로 가정 밖에 나온 청소년은 건강악화는 물론 끼니를 구하는 것조차 어려운 상황에 있거나, 절도나 성매매 등의 범죄에 노출되기 쉬워 이들에 대한 조기 개입과 보호·지원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 및 제25조 제1항에

따라 가정 밖 청소년의 취약한 상황에 초점을 두고 이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인권보호 방안을 검토하게 되었다.

II. 판단 및 참고 기준

「헌법」 제10조, 제31조 및 제32조, 제34조,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3조, 제19조 및 제20조, 제24조, 제26조 내지 제28조를 판단기준으로 삼았고,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제10호(2007년) 등을 참고하였다.

III. 판단

1. 법정대리인 동의 불비로 인한 사각지대 해소방안 검토

위원회의 2015년 모니터링에서, 가정 밖 청소년이 전학, 은행통장 개설, 휴대폰 구입, 병원 치료나 입원 등의 과정에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요구되지만, 사실상 부모와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거나 부모의 학대로 가정을 나온 경우 부모의 동의를 받기 어렵고 법정대리인이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도 있어 일상생활의 불편함뿐만 아니라 주요한 권리의 향유에 어려움이 발생한 사례들이 있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66조에 따라 미성년자가 근로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친권자나 후견인의 동의서가 요구되지만 가정 밖 청소년은 이를 충족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비공식적인 노동시장에서 일하거나, 열악한 근로환경에 놓일 가능성이 높고 심지어 범죄환경에 빠지기도 한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상황 때문에 가정 밖 청소년의 권리 보호와 복리를 위하여 후견인 역할을 수행할 보호자가 필요한데, 현행법상 청소년보호기관은 「민법」 제922조의2에 따른 친권자의 동의를 갈음하는 재판, 제924조의 친권의 상실

또는 일시정지의 선고나 제924조의2의 친권의 일부 제한의 선고,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제3조1)에 따른 후견인 제도를 활용하여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법적인 보호를 할 수 있다.

그런데 청소년보호기관이 이러한 제도를 활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문제이다. 아동복지시설의 장의 경우 이미 2000. 1.부터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규정하는 보호시설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고아가 아닌 미성년자에 대해 법원의 허가를 받아 후견인 역할 수행이 가능하였으나, 아동복지시설 관계자들은 법적 절차 진행의 복잡함과 대응의 어려움으로 이러한 제도를 활용하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있고, 실제 이들 시설에서 이러한 절차를 진행한 곳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친권자의 동의를 갈음하는 재판이나 친권 일부제한 재판 제도 등의 경우 당사자인 아동에게도 청구권한이 있지만 이들이 전문가의 도움 없이 직접 동 제도를 활용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이를 고려하면 2016. 2.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청소년보호기관이 보호시설의 범위에 포함되었다라도 위 아동복지시설의 사례를 볼 때 제도 활용이 활성화되지 못할 것임을 어렵지 않게 유추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청소년보호기관 종사자가 이와 같은 제도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침이나 매뉴얼 등을 통해 동 제도를 상세히 안내하는 한편, 후견인 지정이나 친권 관련 재판절차에서 법률조력 제공과 같이 사법접근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1)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보호시설이 있는 고아가 아닌 미성년자에 대해 보호시설의 장 등이 후견인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호시설의 범위에 청소년쉼터 등은 제외되어 있었으나 2016. 2. 법률 개정으로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제1호 및 제2호의 청소년쉼터 및 청소년자립지원관”도 보호시설에 포함되어 2016. 5.부터 시행되었다.

2. 가정 밖 청소년의 교육권 보장

가. 원적교 복교 불허 문제

「헌법」 제31조와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28조는 아동의 교육에 대한 권리를 규정하고 있고, 특히 동 협약 제28조 제1항은 당사국으로 하여금 아동의 교육에 대한 권리를 달성하기 위하여 학교의 정기적 출석과 탈락율 감소를 장려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런데 위원회의 2015년 모니터링에서, 학교를 떠나거나 장기 결석한 가정 밖 청소년이 학교에 돌아갈 의지가 생기게 되더라도 학교가 이들의 복교를 불허한 사례들이 확인되었는데, 특히 고등학생의 경우 대부분 불허되고 있다.

현행 법령상 학생의 입학, 재취학, 전학 및 편입학 등은 학교장이 결정하고 있는데, 일탈이나 남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절차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교육청 내에 별도의 전담기구를 두는 것이 한 가지 방안이 될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정부가 교육(지원)청에 설치할 계획인 미취학 및 학업중단 학생 관리 전담기구가 고등학생도 포함하여 가정 밖 청소년의 원적교 복교 사안을 다루도록 하고, 학교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이들의 복교를 거부할 시 이의제기나 심의 절차를 도입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나. 청소년보호기관 생활 기간에 대한 출석 불인정 문제

위원회의 2015년 모니터링에서, 가정폭력으로 청소년쉼터에 입소한 청소년이 가해자가 학교에 찾아올까 두렵거나 학대 후유증으로 등교하지 않은 경우에도 대부분의 학교(특히, 고등학교)가 그 기간을 무단결석으로 처리하여 상급학교 진학이나 복학이 어려웠던 사례들이 있었다.

가정폭력, 위협에의 노출과 같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가정복귀가 어려워 청소년쉼터 등에서 긴급하게 보호되고 있는 청소년은 그 기간 중 학교에 거의 출석을 하지 못하여 무단 결석으로 처리되고 있는바, 나중에 다시 학교에 갈 의지가 있는 경우 그 상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보호기관에서 생활하는 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교육부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 의하면,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학생을 보호하는 경우 위탁학생으로 등록하여 관리하고 추후 지필·수행평가를 포함하는 재적교 평가에 응시하는 것을 조건으로 출석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보호기관에서의 생활기간 역시 학교 출석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3. 가정 밖 청소년의 보건·의료서비스 접근성 제고

가. 가정 밖 청소년의 건강권 보장 필요성

위원회의 2015년 모니터링에서는 청소년보호기관에 입소한 가정 밖 청소년 상당수가 가정의 방임으로 치아 손상, 피부병, 결핵 등의 건강문제가 있지만 비용이 많이 드는 경우 치료의 어려움이 있고, 정신적 질환으로 치료를 요하는 경우가 상당수지만 보호기관이 이에 적절히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임이 확인되었다. 가정의 돌봄을 받지 못하고 의식주가 불규칙하기 때문에 가정 밖 청소년의 건강 수준은 일반 청소년에 비해 크게 떨어지는 반면, 질병 초기부터 거의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여 심각한 단계에 이르기도 하며, 특히 여성 청소년의 경우 성매매에 노출되는 등의 환경 속에서 기본적인 성교육과 위생교육을 받지 못하여 추가적인 질병 위협에 놓여 있다. 이렇듯 가정 밖 청소년은 보건·의료서비스의 대표적인 건강 취약계층이기 때문에 이러한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제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나. 보건·의료 서비스 접근 기반 마련 : 의료급여 수급권 지정 문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는 이 법에 따라 의료급여 등의 급여를 실시하는 보장시설로 아동복지시설 등을 규정하고 있지만 청소년쉼터 등 청소년복지시설은 제외되어 있다. 만약 청소년복지시설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보장시설이 된다면 청소년쉼터를 이용하는 가정 밖 청소년이 보다 용이하게 의료급여를 신청하고 지급받음으로써 실제 의료급여의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청소년복지시설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보장시설로 지정된다 해도 이를 이용하는 가정 밖 청소년이 자동적으로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되는 것은 아니고, 수급권자 자격 여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의3 제2항 기준에 따라 결정된다. 그런데 대부분의 가정 밖 청소년은 소득이나 부양의 확인 등 조사와 위기상황에 대한 현장조사 등의 절차를 따라가기 어려워 사실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의3 제2항의 기준을 충족하기 어렵다.

따라서 가정 밖 청소년에게 의료급여 수급권을 부여하기 위해서 「의료급여법」 제3조 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급권자에 “「청소년기본법」 제17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을 이용하는(또는 지원을 받는) 청소년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 건강 특화형 쉼터 기능 보완

정부는 가정 밖 청소년의 의료 접근성 제고를 위하여 2013년부터 3개소의 일시쉼터를 '의료 특화형 쉼터'로 지정하여 운영하였으나 실제 운영 내

용이 '의료 특화'라는 명칭과 불일치한다는 문제제기가 있어, 2016년 '건강 특화형 쉼터'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그런데 '건강 특화형 쉼터'가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의 경우 응급치료 및 의료기관 연계에 초점을 두고 있고 의료지원 인력이 있더라도 의사가 월1회 진료한다거나 간호사가 주3회 순환배치하는 등의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여전히 열악한 상황이다.

가정 밖 청소년의 건강 수준이 매우 취약하고 이들이 치료를 위해 직접 의료기관을 찾아가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들이 있는 현장에서 기본적인 의료조치가 이루어지게 할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는 건강 특화형 쉼터를 확대할 필요가 있으나 우선은 건강 특화형 쉼터의 '건강 특화' 기능을 보장하고, 비상근이라도 의사가 최소 주1회 이상 문진 및 의료 상담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라. 정신건강 의료서비스 접근성 제고

정서적, 인지적 문제가 있는 가정 밖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이들에 대한 전문적 개입이 필요하고, 정확한 진단이 선행되어야 한다. 특히 보호기관에 입소하지 않았거나 짧은 기간 머무르는 경우 초기 개입의 필요성이 더욱 크고, 그 방법도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 형태가 실효적일 것이다.

「아동복지법」 제54조 제2항 및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52조 관련 [별표 11]에 따라 아동양육시설 및 일시보호시설의 경우 아동 30명당 임상심리상담원 1명을, 보호치료시설에는 시설당 1명을 배치하도록 되어 있는 것과 달리, 청소년쉼터에는 이를 이용하는 청소년에 대한 진단 및 치료를 지원할 전문가가 배치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청소년쉼터를 이용하는 가정 밖 청소년

년에 대한 즉각적이고 안정적인 진단을 할 수 있도록 청소년쉼터 내에 임상심리상담원을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예산이나 쉼터 이용 청소년 수 등을 고려하여 임상심리상담원을 우선 배치하거나, 최소한 쉼터의 평균정원을 고려해 지역별로 몇 개 쉼터를 묶어 임상심리사를 배치하는 방안을 우선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 제3호에 근거한 청소년치료재활센터는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느끼는 청소년에게 상담치료 및 대안교육을 제공하고, 특히 의료인력이 상주하고 전문 상담사가 생활지도를 함께 하기에 전문적 심리치료 지원이 장기간 필요한 청소년에게 가장 적합한 시설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청소년치료재활센터는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 1개소만 설치되어 있고 입교할 수 있는 규모가 단기(4박5일) 25명, 장기(1개월/4개월) 60명으로 극히 일부의 청소년만이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정서·행동장애가 심하지 않은 청소년은 기존대로 청소년쉼터에서 보호한다 하더라도, 심각한 정서·행동장애를 가진 청소년은 청소년치료재활센터로 직접 연계하는 방안이 보다 효과적이므로 청소년치료재활센터를 광역단위의 거점지역에 추가 설치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4. 청소년쉼터 기능 보완

가. 청소년쉼터 기능 재정립 및 유형의 다양화·전문화

위원회의 2015년 모니터링에서 현장 전문가들은 입소기간에 따른 유형별 쉼터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쉼터별 특성이 부재하여 다양한 특성을 갖고 있는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에 한계가 있고 일시쉼터가 갖고 있던 본래의 아웃리치 기능이 제대로 수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단기와 중장기 쉼터간 차별성이 없어지고 있고, 특성별 청소년쉼터는 구축되어 있지 않은

가운데 입소기간의 적용은 경직되어 있어 지속적인 보호가 필요한 가정 밖 청소년이 서비스 기간의 제한으로 인하여 쉼터를 전전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기본적인 자기관리가 어렵거나 정신적 질환이 있어 전문적인 치료가 시급한 청소년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이들에 대해 특화된 쉼터는 운영되고 있지 않고, 성별에 따른 형식적 구분만 있을 뿐 성별 특화도 이루어지지 않는 한계가 지적되었다.

따라서 가정 밖 청소년의 특성과 요구에 기반하여 청소년쉼터를 다양화, 전문화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청소년쉼터의 바람직한 운영방향에 대한 기본원칙을 법률에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청소년쉼터의 목표와 서비스 제공의 원칙을 규정하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다.

한편, 현재 가정 밖 청소년 아웃리치는 일시쉼터가 담당하고 있지만, 2016년 1월 기준으로 전국에 28개소에 불과하여 이들 일시쉼터가 전역을 모두 담당하기에 어려움이 있고, 아웃리치에서 배제되는 지역도 많은 상황이다. 따라서 향후에는 일시쉼터를 기초자치단체 단위에서 설치할 필요성이 있지만, 우선적으로는 시·도 단위로 가정 밖 청소년 밀집지역 등에 일시쉼터를 증설할 필요가 있다.

한편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별표 2]의 일시쉼터 종사자 배치기준에는 시설장, 행정원 또는 취사원, 보호·상담원이 있지만 아웃리치 전담요원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가정 밖 청소년을 발굴하고 이들을 적절한 보호기관으로 연계하는 과정에서 아웃리치 전담요원의 역할이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들을 해당법령의 일시쉼터 종사자 배치 기준에 명시적으로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 청소년쉼터 시설환경 개선 및 인권보호 강화

위원회의 2015년 모니터링에서 현장 전문가들은 쉼터에 입소하는 대부분의 청소년이 학대경험 등으로 인해 타인과의 관계형성에 어려움을 겪거나 치유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쉼터가 대개 다인 1실로 구성되어 있어 가정 밖 청소년의 사생활 보장이나 심리적·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쉼터가 청소년들을 자체 프로그램이나 상담 또는 종교적 행사에 의무적으로 참여하게 한다거나, 외출 제한 등과 같은 엄격한 규율과 통제 방식으로 운영되면서 가정 밖 청소년의 인격권, 종교의 자유 등 기본권 침해 사례가 있었고, 청소년 성소수자 등에 대한 차별 사례도 발견되었다.

「아동복지법」상 아동복지시설은 ‘거실의 실제 면적은 아동 1인당 공간(6.6㎡), 침실 1개 정원 3인’ 기준으로 되어 있는데 반해,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17조 [별표 3]의 청소년복지시설 설치·운영 기준에는 청소년 쉼터 시설이 입소인원 1인당 연면적 11㎡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을 뿐 침실당 정원 기준은 없다. 따라서 청소년쉼터도 아동복지시설과 같이 침실 기준으로 적정 인원을 배치할 필요가 있으며, 그 외에 변기 및 세면기, 샤워기 수 등 쉼터 생활자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시설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가정 밖 청소년의 자율성과 충돌하는 엄격한 규율에 기반한 쉼터 운영 방식이나 종사자의 인권의식 결여 등에 의해 발생하는 인권침해와 차별은 가정 밖 청소년들이 쉼터 입소를 꺼리게 하는 주요 요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에 청소년보호기관에 침해사례들을 알리고 종사자에 대한 교육

을 강화하는 한편, 쉼터 평가시에도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인권침해 발생 여부를 확인하는 등 인권침해 및 차별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다. 자립기반 마련을 위한 주거지원 확대

위원회의 2015년 모니터링에서는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주거 지원 등 자립기반 마련을 위한 제도가 미흡하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 지원’ 대상자는 소년소녀가정,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등이며, 청소년쉼터 퇴소(예정)자는 제외되어 있다.

청소년쉼터에서 생활하는 청소년 중에는 가정 복귀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어, 안정적인 주거 보장은 이들의 자립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따라서 가정복귀가 어려워 일정한 기간 청소년쉼터에서 생활하면서 자립을 준비하는 가정 밖 청소년에게도 전세주택 지원과 같은 주거지원제도가 적용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조치할 필요가 있다. 이 때, 여건상 중장기쉼터 입소가 어려워 단기쉼터에 머물며 자립을 준비하는 청소년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쉼터 유형을 구분하지 않고 자립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에 초점을 두어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5. 실종아동 신고의무 규정 개선

가. 실종아동 신고의무 규정의 내용 및 문제점

위원회의 2015년 모니터링에서는 가정 밖 청소년의 상당수가 가정확대를 경험하고 이를 견딜 수 없거나 저항의 표지로서 가정 밖의 삶을 선택하지만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실종아동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에 따른 실종아동 신고의무 규정으로 인해 보호기관 종사자들

은 해당 청소년이 실종아동임을 알게 된 경우, 경찰청장이 구축하여 운영하는 신고체계로 지체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이로 인해 가정 밖 청소년이 보호기관을 기피하게 되어 더욱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되거나, 학대를 한 부모가 위 규정을 악용하여 보호기관 종사자를 위협하고 입소한 청소년을 강제로 데려가는 사례가 확인되었다.

위 신고의무 규정은 자격을 갖추지 않은 자가 무단으로 아동을 보호할 가능성을 예방하고 실종아동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도모하여, 가정 밖에 있는 아동을 보호하고 그 아동을 찾고 있는 가정의 복리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가정으로 즉시 복귀하는 것이 아동에게 도움이 된다는 전제가 성립되어야 위 신고의무 규정의 취지에 부합할 수 있는데, 상당수의 가정 밖 청소년은 학대 등으로 인해 가정에서 나온 경우이고, 상황에 따라서는 가정으로 즉시 복귀하는 것이 성공적인 가족 재결합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

물론 이러한 사정이 「실종아동법」 제7조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게 된다면 신고의무의 예외를 적용받을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가정 밖으로 나온 청소년이 자신의 상황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따라서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한다는 규정 하에서는, 청소년보호기관 종사자가 가정 밖 청소년의 상황을 고려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파악하여 신고의무 예외를 적용받는 것이 매우 어렵다. 현재와 같은 실종아동 신고의무 규정은 청소년이 공식적인 보호기관을 회피하게 만들어, 결과적으로 가정 밖 청소년을 공식적 영역에서 더욱 배제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나. 실종아동 신고의무의 예외규정 마련

가정 밖 청소년이 안전한 환경으로 진입하도록 유도하려는 목적과, 청소년에 대해 양육권을 가지고 있는 부모에게 국가가 청소년의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적절하게 제공하려는 목적을 동시에 충족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에 가정 밖 청소년 보호기관 등 일부 지정된 기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신고의무의 예외규정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첫째, 현행 규정과 같이 '지체 없이'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대신, 청소년과 관계를 형성하고 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신고유예 기간을 인정하는 방안이 있다. 둘째, 보호기관 종사자가 해당 청소년의 의사를 필수적으로 파악하여 당사자 동의가 있어야만 신고하도록 규정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청소년이 자신의 행방을 알리기를 거부하는 경우 이를 신고의무 예외 또는 신고유예 기간 연장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거나, 또는 청소년이 안전하다는 사실 자체는 부모에게 고지하되 구체적인 행방은 부모에게 알리지 않을 수 있도록 별도의 절차를 만드는 방법이 있다. 셋째, 가정 밖 청소년의 경우 아동학대나 가정폭력의 피해자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해당 청소년이 귀가할 경우 가정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다.

6. '가출 청소년'에 대한 관점과 접근방식 전환

가. '가출 청소년'에 대한 관점의 문제

위원회의 2015년 모니터링에서는 '가출'이 '반사회적 행동'이라는 관점에 기반하고 있어 경찰의 단속 또는 언론 보도를 통해 다루어지는 가출 청소년들이 비행청소년, 예비범죄자로 간주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가정 밖 청소년의 상당수가 가정에서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여 거리에서 기본적인 생존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가출 청소년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로 인하여 기피대상이 되기도 하며, 범죄 피해를 입더라도 강제 귀가 조치가 두려워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 등 공적 영역에서 배제되어 있다. 이로 인해 가정 밖 청소년은 사회적 안전망 안에서 적절한 보호를 받기 어려워 범죄의 피해자나 가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따라서 '가출'을 청소년의 반사회적 행위라고 보는 관점에서 벗어나 청소년이 더욱 안전하고 건강한 상황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인권보장의 측면에서 국가의 정책개입이 필요하다.

나. '가정 밖 청소년' 관점과 이에 기반한 정책방향 구축

현행 정책에서 정의되는 '가출'이란 '부모나 보호자의 동의 없이 하루 이상 무단으로 집에 들어가지 않은 행위'이고 정책의 초점은 가출청소년을 귀가시키는 데 맞추어져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이 가출이라는 행위에만 초점을 두고 정책 대상의 개념을 정의할 경우 가출청소년이 처해 있는 상황을 간과하기 쉬워 실질적인 보호와 지원에 한계가 발생할 수 있다.

'가출'은 가정에서의 학대, 가족 내 갈등, 빈곤 등에 대한 대응의 일환이기 때문에 각 발생 원인에 따라 예방적 접근이 필요하다. 또한 '가출' 이후 생존을 위해 절도, 성매매 등 범죄를 저지르거나 노동시장에서 부당 대우를 당하는 등 위험 상황에 노출되기 쉽기 때문에 이러한 사회적 낙인과 위험 상황에 대한 개입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따라서 가정 밖 청소년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가출'이라는 행위보다는 '가정 밖'이라는 상황에 초점을 두고, 이들에 대한 지원 및 보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다. 이에 ‘가출’ 청소년이라는 용어를 ‘가정 밖’ 청소년으로 대체하고,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6조를 이에 맞게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 소년법상 소위 ‘우범소년’ 규정 개선

가출 청소년에 대한 대표적인 관점이 ‘가출’을 지위비행으로 보는 것이다. 지위비행이란 음주, 흡연과 같이 성인의 경우에는 문제되지 않지만 청소년의 경우에는 미성년자라는 사회적 신분과 연계되어 사회적으로 용납되지 않고 일탈행위로 간주되는 것으로서 그 자체로 범죄는 아니지만 적어도 범죄의 전조현상으로 보고 그에 대해 일정한 제재를 가하기도 하는 행위를 말한다.²⁾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3호는 이른바 ‘우범소년’에 대한 보호사건 송치를 허용하고 있는데,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 소년 중 i)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이 있거나 ii)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거나 iii)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을 경우에 소년보호처분의 대상으로 삼고, 경찰서장은 이에 해당하는 소년이 있으면 직접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하며, 이러한 소년을 발견한 보호자, 학교·사회복지시설 등의 장은 관할 소년부에 통고할 수 있다.

‘정당한 이유 없는 가출’을 우범사유로 규정한다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밝혀지지 않는 한 ‘가출’이라는 행위를 비행이라고 추정함을 의미하는데, ‘가출’은 상당히 많은 청소년이 경험하는 현상으로 가출 자체가 청소년 개인의 반사회적 성향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특히 많은 경우 ‘가출’이 가정폭력, 학대 등의 가족 상황에서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2) 다른 나라의 입법례에 따라서는 특정한 지위비행을 범죄로 규정하는 경우도 있다.

러한 청소년의 피해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된다. 이러한 규정은 설령 보호사건으로 송치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가출’ 그 자체를 ‘반사회적 행동’으로 낙인찍는 것이며, ‘가출청소년’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로 인하여 이들이 사회에서 배제되고 나아가 범죄행동에 노출될 가능성을 높인다.

따라서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는 것”을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규정을 삭제하고, 나아가 위 조항 제3호 전체를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IV.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권고하기로 결정한다.

2016. 11. 24.

위원장 이 성 호
 위 원 김 영 혜
 위 원 이 경 숙
 위 원 정 상 환

01 토론

우범소년 규정 폐지 필요성 토론회

양현규 (법무부 소년범죄예방팀 팀장)

정혜림 (법원행정처 민사지원제1심의관실 사무관)

고평기 (경찰청 아동청소년과 과장)

팽주만 (교육부 학교생활문화과 연구관)

이승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국회의원 박완주 & CPE 「위기아동 지원방안 마련 연속토론회」 #2

우범소년 규정 폐지 필요성 토론회

양현규 법무부 소년범죄예방팀장

최근 청소년 강력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과거 그 어느 때보다 청소년 비행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커진 상태이다. 청소년 비행에 대한 높아진 사회적 관심은 처벌강화 요구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고, 넓은 의미에서 보면 우범소년도 이러한 사회적 관심에 포함된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우범소년의 경우에는 아직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점에서 범죄소년이나 촉범소년과는 다르고, 사회복지적 측면에서 포괄적 접근을 우선적으로 시도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범소년 제도의 폐지와 사회복지체계로의 통합 가능성을 별도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우범소년 제도가 죄형법정주의 원칙이나 성인과의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고, 아동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남용될 소지가 있다는 점 등은 여러차례 지적되어 왔다. 2007년에 소년법을 개정하여 우범요건을 좀 더 구체화하였지만 현재에도 이러한 지적은 여전히 유효한 상황이다. 따라서 우범소년 제도 자체를 폐지하고 사회복지체계에서 기존의 우범소년을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 다만, 현행 우범소년 제도가 대상 청소년을 보호하고 건전한 성장을 촉진하는 긍정적 기능도 갖고 있으므로 그 폐지 여부에 대하여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할 부분이 있다.

첫째로, 우범소년 제도를 반드시 폐지해야만 하는가? 하는 점이다. 소년에 대한 보호기능을 사회복지체계와 소년사법체계로 분배하거나, 우범요건을 강화하고 우범소년에 대한 처분을 제한하는 등의 방법도 검토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2000년대 초반 우범으로 소년부에 송치되거나 통고된 경우는 매년 1~2건에 불과하였다. 그러던 것이 2010년 이후 크게 증가하여 2019년에는 1,114건에 이르렀다. 우범사건이 증가하게 된 원인이 명확하지는 않지만, 소년에 의한 강력범죄가 꾸준히 언론에 보도되고 국민불안이 가중됨에 따라 경찰이 소년부 송치를 적극 활용하게 된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학교나 사회복지시설의 장이 소년부에 통고하는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학교 등의 업무 속성상 그 숫자가 그리 많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행 소년법은 제4조제2항에서 우범소년이 있을 때에는 경찰서장이 직접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소년부 송치를 의무사항으로 하고 있다. 입법자는 법원이 소년의 초기 비행 상황에 일찍부터 개입하는 것이 소년의 보호를 위해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의무적 송치를 선택했던 것으로 추측된다. 여기서 해당 조항을 ‘송치할 수 있다’로 임의규정으로 변경하는 것만으로도 우범소년 제도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의무적 송치 규정 하에서는 경찰이 소년의 범죄위험성이나 사회복지 시설에서의 보호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 이를 임의규정으로 변경한다면 경찰은 소년의 개별적 상황에 맞추어 위험성이 경미한 소년은 아동복지시설 인계, 위험성이 큰 소년은 소년부 송치를 선택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결과적으로 사회복지체계와 소년사법간 소년에 대한 보호조치의 자연스러운 분배가 이루어 질 수 있다.

우범요건을 강화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우범조항의 추상적 부분을 제거하고 명확하고 구체적인 문언을 추가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백혜련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년법 개정안에서 ‘불안감’의 의미에 “위력을 행사해”를 추가한 것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소년원 수용기간에 일정한 제한을 가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우범소년이 소년원 등에 수용된 경우, 일정한 기간마다 임시퇴원 심사를 의무화하여 소년 스스로의 개선노력을 통해 수용시설로부터 조기이탈을 촉진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현행 우범소년 제도하에서도 소년 보호조치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상당한 개선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로, 우범소년 제도를 폐지한다면 사회복지체계에서 이들을 관리할 충분한 준비가

갖추어져 있는지도 검토해 보아야 할 부분이다. 소년사법상의 보호조치를 행정상 보호조치로 이전하였을 때 보호의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우범소년을 폐지하고 사회복지체계로 통합해야 한다는 논의는 구체적으로는 아동복지법 제15조에 의한 보호조치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대 국회에서 김상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년법 개정안에서도 아동복지법 제15조에 의한 보호조치를 받도록 하고 있다. 그 이외에 청소년복지지원법에 의한 상담·복지시설에서의 보호 등과도 관련이 있다.

아동복지법 제15조에서는 보호대상 아동의 가정위탁, 아동복지시설 입소 등 필요한 보호조치와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의무사항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청소년의 비행성은 주로 가정의 붕괴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적절한 개입을 통해 보호기능을 회복한다면 비행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아동복지법상의 보호조치는 필요하고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아동복지법상의 보호조치는 정서적, 육체적 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을 뿐 아동 자체가 현재 갖고 있는 범죄 위험성이나 비행가능성에 대한 고려는 부족한 편이다. 어떠한 이유에서건 이미 비행성이 심화되고 우범조건을 갖춘 소년이 아동복지시설 등의 보호조치를 거부하고 스스로 보호시설에서 이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막고 보호조치를 유지할 수 있는 적절한 수단이 그리 많아 보이지 않는다. 아동복지법상 보호조치는 아동의 주거와 이동을 제한하는 강제조치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점은 청소년복지지원법에 의한 청소년쉼터 등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그렇다고 하여 아동복지 시설 등에서의 보호조치에 강제성을 부여하는 것도 적절하지는 않다. 이는 사법상의 조치를 행정상의 강제로 변경하는 것에 불과하고 또 다른 논란을 불러올 소지도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실제 소년사법에서 우범소년으로서 이목을 끄는 소년은 스스로 보호조치에서 이탈하는 소년들이다. 아동복지법상 보호조치에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이들은 가정은 물론 아동보호 시설에서도 이탈하여 사회복지체계 밖에 존재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상황에서 우범소년 제도를 폐지한다면 사회복지체계를 벗어나고자 하는 소년들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기능마저 사라져 보호의 공백상태가 발생하게 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우범소년 제도 폐지 논의에서는

사회복지체계가 소년법상의 보호조치 기능을 충분히 대신할 수 있는지를 깊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아동의 권리와 인권보호를 위한 개선조치가 보호의 포기로 이어져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소년사법 절차에서 차별이나 과잉처분 없이 적절한 보호를 제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우범소년을 폐지하고 사회복지체계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논의는 충분히 공감할 만하다. 다만, 우범소년 제도가 갖은 긍정적 측면을 고려하였을 때, 우범소년 제도를 폐지하고 사회복지체계로 전환할 것이지 타당한지 여부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무엇보다 소년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가 충실히 지켜져야 하고, 보호의 공백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적절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Horizontal lines for writing notes on page 71.

국회의원 박완주 & CPE 「위기아동 지원방안 마련 연속토론회」 #2

우범소년 규정 폐지 필요성 토론회

고평기 총경 (경찰청 아동청소년과장)

I. 서론

'20년 12월 법무부 소년보호혁신위원회에서는 소년의 인권보호 강화를 위해 '우범소년 규정 폐지' 권고를 발표한 바 있다. 이를 계기로 우범소년 규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규정의 존립·폐지에 대해 다양한 시각에서의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다. 아동·청소년 보호를 최일선에서 책임지고 있는 경찰로서 현장에서의 사례 등을 바탕으로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우리 사회와 유관부처가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방향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보고자 한다.

II. 우범소년 송치 관련 현황

1. 경찰의 우범소년 송치현황

경찰은 「소년법」 제4조 제2항에 규정된 소년부 송치의 주체로서, 범죄환경에 노출된 소년이 장래 범죄소년으로 나아가는 것을 예방·차단하기 위해 우범소년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소년법 제4조에서 규정한 우범사유 중 1개 이상에 해당하고, 성격·환경에 비추어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우범성이 높은 경우에 한해 최소한으로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고 있다.

- 제4조(보호의 대상과 송치 및 통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년은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
1. 죄를 범한 소년
 2.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고 그의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인 소년
 - 가.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性壁)이 있는 것
 - 나.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는 것
 - 다.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는 것
- ②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소년이 있을 때에는 경찰서장은 직접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

< 경찰청 우범소년 송치 현황 >

구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건수	52	178	242	416	799

우범소년규정에대해서는지속적으로논란이있지만, 실제현장에서우범소년으로송치되는사례를 살펴보면 가정·학교의 보호를 기대하기 어렵고 범죄의 가·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 놓인 소년들로, 제도를 활용하지않는다면기존의범죄취약환경에 그대로돌아갈수밖에없는경우가많다.

- (사례1) SNS를 통해 알게 된 남성들을 만나기 위해 상습적으로 가출하고, 그 과정에서 성폭행 피해를 입었으나 이후에도 동일 사유로 가출을 반복하던 대상자를 범죄 재피해 방지를 위해 우범소년 송치(보호자인 모는 지병으로 인해 돌봄이 어려운 상황)
 - ⇒ 심리 진행 중 / 향후 보호처분 결정에 따라 모니터링 및 적절한 사후 관리 예정
- (사례2) 보호자인 아버지의 상호 불신·갈등으로 인해 2년여간 가출생활을 하던 중 유흥업소에서 성인 남성을 만나 동거, 이후 채팅앱을 통해 성매매를 하다가 적발되어 우범소년 송치
 - ⇒ 1호(감호위탁-신병인수 위탁보호위원), 4호(단기 보호관찰) 처분

또한, 소년법 중 학교 밖 청소년 등 위기청소년이 40% 이상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교육 제도라는 울타리 안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청소년일수록 범죄 유혹에 취약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그만큼 위기청소년에 대한 공고한 사회안전망 구축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 소년범 중 학교 밖 청소년 비율 >

구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비율(%)	43.8	42.2	40.9	44.7	45.0

이와 같이 소년의 선도·보호를 위해 우범소년 제도를 활용하고 있으나, 우범사유 및 우범성에 대한 구체적 안내를 통해 법 조항에 대한 자의적 해석·판단의 여지를 최소화하고 있으며, 소년이 본래 환경으로 복귀 시 범죄 가·피해 우려가 있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보충적·제한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등 소년의 인권이 부당하게 침해당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2. 우범소년 제도에 대한 논의

우범소년 제도에 대하여는 오랜 기간 찬·반 의견이 양립하고 있다. 우범소년 존치론은 현저한 비행성이 나타나는 소년에 대해 보호 차원에서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우범소년 제도는 비행 초기단계에 개입하여 소년이 향후 범죄소년으로 발전하는 것을 차단하는 등 범죄예방에 효과가 있으며,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교육을 통한 선도라는 점에서 순기능적 측면을 갖고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우범소년 제도 폐지론은 실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범죄를 저지를 우려'만으로 사법적 처분인 보호처분을 하는 것은 소년의 인권보장 측면에서 부적절하며, 우범소년 송치에 따른 낙인효과로 인해 소년의 건전한 육성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부작용을 초래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현재 소년법 조항의 '성벽', '정당한',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 등의 표현은 추상적·불확정적 개념으로,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는 문제도 제기하고 있다.

3. 현행 복지제도의 한계

우범소년을 사법적으로 다루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관점에서 우범소년 조항을 삭제한다고 하여도, 구체적 정황을 바탕으로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높다고 판단되는 소년을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으므로, 우범소년 제도를 대신하여 소년이 범죄로 나아가지 않도록 예방하는 방안이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우범소년 폐지론의 주요 논거는 우범소년이 규율하는 아동·청소년의 문제는 사법체계가 아닌 복지적 개입으로 해결해야 할 사항이라는 것으로, 이와 관련하여 아동복지법·청소년복지지원법 등의 적극적 운용을 주장하고 있다.¹⁾

그러나 현재 아동복지법에서 보호조치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보호대상아동'²⁾은 '보호자가 없거나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않은 경우의 아동'으로 소년법상 우범소년 규정과는 대상과 목적이 상이하고, 그 조치 역시 보호를 요하는 소년에 대한 보호조치일 뿐 해당 소년이 더 큰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선도·교정하는 조치는 아니라고 할 것이다.

청소년복지지원법상 '위기청소년'은 가정 문제가 있거나 학업 수행 또는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등 조화롭고 건강한 성장과 생활에 필요한 여건을 갖추지 못한 청소년으로 '우범소년'과 일부 유사한 부분이 있겠으나, 이러한 위기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³⁾으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보호자에 대한 상담·교육뿐이며, 대부분의 조치를 임의규정으로 두고 있어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 소년을 선도·보호하기에는 부족한 실정이다.

1) 법무부 소년보호혁신위원회 제5차 권고(20.12.30.)

2) 아동복지법 제3조(정의) 4. "보호대상아동"이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말한다.

3) 청소년복지지원법 제5장 위기청소년 지원 제13조(상담 및 교육)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위기청소년에게 효율적이고 적합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위기청소년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위기청소년의 가족 및 보호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상담 및 교육을 권고하는 경우에는 이에 협조하여 성실히 상담 및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16조(청소년 가출 예방 및 보호·지원) ①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소년의 가출을 예방하고 가출한 청소년의 가정·사회 복귀를 돕기 위하여 상담, 제31조 제1호에 따른 청소년쉼터의 설치·운영, 청소년쉼터 퇴소 청소년에 대한 사후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이처럼 현행 법체계에는 우범소년에 대한 보호처분을 대신할 수 있는 복지적 행정처분이 존재하지 않으며, 우범성이 있는 청소년에 대한 선도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이나 인력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III. 결론

경찰청 역시 우범소년 제도가 안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 인식하고 있으며, 소년의 인권보호와 사회적 낙인 예방을 위해 법·제도적 개선·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한다.

다만,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현재로서는 우범소년 규정이 기능하고 있는 최소한의 선도·보호 역할을 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만큼, 이에 대한 대안 마련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법무부·여가부·복지부 등 관계기관 간 논의를 통해 조속히 제도에 대한 개선·보완 방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아동의 권리에 비추어 본 우범소년 개정 방향에 대한 토론

팽주만 교육연구원(교육부)

1. 교육현장에서 우범소년 통고제도의 오·남용에 대한 지적

- ▣ 우범소년에 대한 학교장 통고 오·남용 사례는 일부는 있겠지만, 대부분 학교에서는 학교장 통고제 운영에 대해 소극적 태도를 지니고 있음
-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소년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학교장이 학교폭력 사건뿐만 아니라 대부분 학교의 선도위원회에서 다루고 있는 유형의 사건 및 교권 침해 사건 등 소년의 광범위한 행위에 대하여 관할 소년부에 통고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음
- 그러나, 대부분 학교에서는 ‘교장이 학생을 고발한다’라는 부정적 인식을 우려하고 통고 대상 학생과 보호자의 강한 민원에 대한 부담 등으로 제도 운영에 상당한 신중한 태도를 가지고 있음
- 더불어, 18년 법원행정처의 「소년 통고 실무」에 따르면, 보호자에 의한 통고(’13년, 33명 → ’17년 134명)와 사회복지 시설장에 의한 통고(’13년 42명 → ’17년 101명)는 증가추세 이나, 학교장의 통고(’13년 111명 → ’17년, 83명)는 감소 추세임을 알 수 있음

2. 중대한 학교폭력을 저지른 가해학생에 대한 학교장 통고제 활성화 고민

- ▣ 통고제도의 가장 큰 장점은 학생들이 형사 사건에 입건되지 않아 전과 기록이 남지 않고, 법원이 조기에 관여 및 보호처분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가해학생의 학습권을 보호받으면서

학생의 건전한 성장을 지원할 수 있다고 판단됨

- 이에, 학교장 통고제는 학교 내에서 교육적 지도가 가능한 학생보다는 학교 내에서의 통제가 어려운 학생을 대상으로 필요한 교육·선도조치를 할 수 있는 제도라 보임

▣ 최근 교육부에서는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효과적인 선도 및 교육 방안으로 학교장의 통고제 활성화를 모색하고 있음

- 시·도교육청 장학사, 소년부 관사, 법원 조사관들로부터 현장의 의견을 들어왔으며, 이들은 학교장 통고제가 학교폭력 가해학생들의 선도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의견을 제시함
- 이는, 서두에 설명한 바와 같이 학교장 통고제가 관련 학생의 수사기록이 남기지 않기 때문에 낙인되지 않으며, 소년의 처벌에 대한 두려움(경찰보다는 관사앞에서를 조치 받는 것을 더 부담간다고 교사, 학부모 등은 의견을 제시)커서 재범을 예방할 수 있을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임

▣ 법원행정처도 「소년 통고 실무」에서 학교장 통고로 적합한 사안으로 형벌법규에 저촉되는 비행을 저지르는 경우, 소년의 정서적 문제가 있어 전문가의 진단 및 상담이 필요한 경우, 교권이 침해된 경우, 가출 장기무단결석 등 가정의 보호력이 미약한 경우, 학교폭력 사안처리 정상적 운영이 어렵거나 피·가해학생의 합의 도출이 어려운 경우로 제시하고 있음

3. 각종 정부 계획 과제로 제시한 ‘우범소년 송치제 활성화’에 대하여

▣ 2017년 부산 중학생 폭행 사건 등 학교밖, 타 학교 학생 간 일련의 폭력 사건을 계기로 청소년 범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었음.

- 청소년 범죄자를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선도와 교화를 통한 재범을 막기 위한 소년 보호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 관계부처 합동으로 ‘학교 안팎 청소년 폭력 예방 대책’을 2017년 12월에 수립했고, 경찰청 주관 과제로 ‘범죄환경에 노출되어 범죄 가능성이 높은 우범소년에 대해 범죄 발생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소년보호사건 송치 활성화’를 마련하였음

▣ 또한, 교육부는 국무총리가 주재한 제15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20년 1월’ 제4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을 발표함

- 관계부처와 함께 ▲학교공동체 역량 제고를 통한 학교폭력 예방 강화 ▲학교폭력에 대한 공정하고 교육적인 대응 강화 ▲피해학생 보호 및 치유 시스템 강화 ▲가해학생 교육 및 선도 강화 ▲ 전사회적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생태계 구축의 5개 영역과 14개의 세부 추진과제를 마련함
- 그 가운데 ‘우범소년 송치제도의 적극 활용’ 과제는 소년법 적용 사건 수준의 학교폭력 발생 시 신속한 가해학생 선도 및 피해학생과의 분리를 위해 마련한 과제임

4. 학교폭력 사안처리 절차와 현황

▣ 실제 학교폭력 사안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과 소년법이 동시에 적용됨. 이는 소년법이 보호와 처벌이라는 형사법적 성격이 강한 반면에 학교폭력예방법은 징계법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임

▣ 학교폭력 사안은 단위학교의 사안조사 결과를 토대로 교육지원청에 설치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피·가해학생에 대한 보호 및 교육선도조치를 심의·의결하며, 그 조치 결정을 피·가해학생측에 통보하며 진행함

- 가해학생의 조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7조제1항에 따라 제1호에서 제9호까지 있음
- 제1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제2호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제3호 학교에서의 봉사, 제4호 사회봉사, 제5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제6호 출석정지, 제7호 학급교체, 제8호 전학, 제9호 퇴학처분임
- 최근 19학년도 가해학생 조치의 현황을 살펴보면, 서면사과 29.5%, 접촉 및 협박·보복 금지 21.2%, 학교봉사 13.6%, 사회봉사 4.9%, 특별교육 및 심리치료 18.5%, 출석정지 7.5%, 학급교체 1.6%, 전학 3.0%, 퇴학 0.2임

국회의원 박완주 & CPE 「위기아동 지원방안 마련 연속토론회」 #2

우범소년 규정은 무엇을 보호하고 있는가?

이승현 선임연구위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 소년법의 우범소년 규정 목적에의 부합성

소년법에 우범소년 규정이 마련된 것은 1958년 소년법 제정 당시부터였다. 1942년 일본의 영향으로 「조선소년령」이 제정되고, 소년법이 제정되면서 대부분의 규정이 일본의 소년법 규정과 유사하게 반영되었다. 우범소년 규정은 1958년 제정 당시 ‘가정의 환경 또는 본인의 성벽을 참작하여 죄를 범할 염려가 있는 소년’이라고 규정되었다가 1963년 개정으로 ‘보호자의 정당한 감독에 복종하지 않는 성벽이 있는 것’, ‘정당한 이유 없이 가정에서 이탈하는 것’, ‘범죄성이 있는 자 또는 부도덕한 자와 교제하거나 자기 또는 타인의 덕성을 해롭게 하는 성벽이 있는 것’으로 사유가 변경되었다.

다시 2007년 소년법 개정을 통해 ‘보호자의 감독에 복종하지 않는 성벽이 있는 것’이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이 있는 것’으로, ‘범죄성이 있는 자 또는 부도덕한 자와 교제하거나 자기 또는 타인의 덕성을 해롭게 하는 성벽이 있는 것’이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는 것’으로 그 사유가 일부 변경되었다. 우범소년 규정이 일부 변경되긴 하였으나 일본소년법의 영향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고, 현재 우범소년 규정은 현재 일본 소년법의 우범소년 규정과 상당히 유사하다.

현재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3호의 우범소년이란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이 있는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는 경우’,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는 경우’이고 그의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 소년을 말한다. 소년법은 범죄소년 외에도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법령에 저촉될 우려가 있는 우범소년에 대하여 필요한 특별조치를 통해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소년을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겠다는 소년법의 목적에 비추어 보았을 때 “형벌법령에 저촉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소년”이라는 이유로 「청소년보호법」, 「아동복지법」, 「학교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보호청소년을 소년사범의 규율대상으로 삼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재논의를 할 때이다. 소년법 제정 당시에는 보호를 받아야 할 이른바 위기청소년을 보호하고 규율할 입법이 없었다고 하나, 현재는 앞서 열거된 법률들에 의해 관련 시설로의 연계나 특별한 지원들을 할 수 있는 보호복지 영역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복지라는 이유로 소년법에서의 우범소년 규정을 그대로 존치하는 것은 과연 실익이 있을지 의문이다.

2. 보호자의 보호해태의 수단으로 전락

최근 소년분류심사원이나 6호처분 시설에 수용된 아동을 살펴보면 우범사유로 시설내 수용이 이루어진 사례가 점점 늘고 있다. 2019년 국가인권위원회 소년분류심사원 방문조사 결과에서도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아동 중 성매매 또는 가출 반복 등으로 인한 우범사유를 이유로 한 위탁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여자청소년의 경우 성매매 재반복 가능성으로 인해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거나 6호처분 시설에 위탁되는 사례가 더 두드러지고 있다. 법원 통고제도의 활용으로 인해, 가출, 학교 부적응, 무단결석, 시설 부적응 등을 이유로 학교장, 아동복지시설의 장, 보호자 등이 법원에 통고하는 형식으로 위탁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심지어 학대피해아동이 보호될 곳이 없다는 이유로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사례도 발견되었다.1) 보호받아야 할 청소년임에도 불구하고 보호기관과 보호책임자가 없다는 이유로, 범죄를 저지른 아동이라도 필요최소한도로 구금되어야 할 시설에서 최소 1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위탁수용되는 사례가 발견되고 있고, 이들 시설에서 적응하지 못할시 다시 다른 시설로 돌려보내지는 상황이 반복되고 결국 소년원과 소년교도소에 가게 되는 사례도 목격되고 있다.

1) 국가인권위원회, 2019년 소년분류심사원 방문조사 후 제도개선 권고 내용 참고, (<https://www.humanrights.go.kr/site/program/board/basicboard/>)

그러나 우범에 해당하는 사유들은 보면 가출이나 성매매 위험 노출, 학교 부적응, 시설 부적응이다. 이러한 사유들은 청소년 한 개인의 문제에 기인한 것이라기보다는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 등으로 인한 가정환경으로부터 이탈의 문제, 학교와 관련 기관의 내부 문제와 결부되어 이탈되는 사례들도 많기 때문에 청소년 개인에 대한 교정교화 목적으로 시설 위탁의 방식을 택하는 것만으로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 더욱이 가출이나 학교 또는 시설 부적응에 책임을 가진 보호자나 시설장, 학교장 등이 해당 영역에서 관리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통고를 통해 소년사범 영역으로 보내지는 사례는 아이들에게 사회적 낙인뿐만 아니라 아이들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어른들의 부적절한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어 경계해야 하는 부분이다.

3. 우범소년에 대한 처우의 차별성 부존재

우범소년이 소년사범에서 보호의 영역으로 들어왔다고 하나 실제로 소년사범단계 초기에 이루어지는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이나 소년보호처분 과정을 살펴보면 우범소년과 범죄소년의 보호에 있어서 차별성을 발견하기 어렵다. 우범소년이 소년분류심사원이나 소년원, 6호처분 시설에 위탁되면 그 안에서 범죄소년과 동일한 징계나 규율방식으로 생활제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결국 보호대상인 우범소년이 범죄소년과 동일하게 취급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소년원 등 소년보호시설에서는 우범소년에 대한 보호지원이 필요한 영역에 대한 별도의 지침이나 매뉴얼이 없고 범죄소년의 처우방식과 동일하게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우범소년들이 소년법의 소년보호시설에서 적절하게 보호받고 있다고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은 대상소년의 비행을 진단하고 분석하기 위해 일정기간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대상을 수용하는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다. 소년법에서의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은 임시조치이고 1개월 이내를 초과할 수 없고 필요최소한의 범위에서 실시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이 '사건을 심리하거나 조사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 된다는 모호한 기준에 따라 관사의 개인적 판단으로 비행단절의 목적을 위해 최장 2개월까지 수용되는 사례도 발견되고 있다. 이러한 결정이 오히려 조기에 소년사범단계에 진입함으로써 인해 사회단절을 일찍 경험하고 비행또래의 형성 등을 통해 소년법이 추구하는 '반사회성 있는 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저해하는 계기가 되고 있지는 않은지 고려해봐야 한다.

4. 죄형법정주의의 관점에서 고찰

우범소년 규정은 "앞으로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소년"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 형법은 죄형법정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형벌을 규정함에 있어서는 법률에 그 내용이 예측가능하도록 명확해야만 한다. 소년법도 형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내리는 절차이긴 하나 형사특별법이기 때문에 이러한 원칙이 준수되어야 한다고 본다.

우범소년 규정은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법원의 형벌법령 위반 행위자와 동일하게 보호처분 대상으로 삼는다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우범소년의 우범사유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위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형법상 예비음모죄의 처벌대상으로 삼고 있는 보호법익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려'가 있다고 하여 처분을 내리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성인에게도 적용되지 않는 규정을 소년이라는 이유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대상이라고 하면서 더 강하게 규율하는 것은 앞서 소년법이 추구하는 가치와도 부합하지 않는다.

우범사유 중 '가출' 등의 문제는 당사자의 문제가 아니라 가정환경 등 소년이 처한 상황에 의한 것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출이나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이나 보호처분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같은 취지로 2016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가출'은 소년 개인의 비행이 아닌 소년이 처한 상황의 문제로 인식하고 가출소년의 인권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서 우범사유 중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는 것이라는 부분을 삭제하도록 법무부에 권고한 바 있음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5. 복지의 영역에서 해결 가능한 우범소년

소년법 제정 당시에는 보호를 받아야 할 이른바 위기청소년을 보호하고 규율할 입법이 없었기

때문에 우범소년 규정을 통해서라도 보호해야 할 대상이 다수 존재하였다. 그러나 현재는 우범사유에 해당하는 대상에 관한 법률이 다수 존재하고 있고, 해당법률과 정책에 따라 관련 시설로의 연계나 특별한 지원들을 할 수 있는 보호복지 영역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성매매로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는 아동”은 피해아동으로 분류되어 보호받을 수 있고, ‘정당한 이유없이 가출’하는 청소년이나 학대피해아동의 경우 「아동복지법」에서의 보호대상 아동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학업을 중단하였거나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를 하는 소년의 경우에도 「학교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의 ‘학교밖 청소년’과 「청소년복지 지원법」의 ‘위기청소년’으로 분류되어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복지의 영역에서 해결 가능한 우범소년의 범주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소년법의 복지적 측면에서의 접근이라는 이유로 우범소년 규정을 그대로 가지고 시설내 처우를 하는 것이 대상소년의 복지를 위해 합리적인가에 대하여 좀더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다만, 현재 우범소년에 해당하는 대상을 보호할 법적 근거는 존재하나 실제로 이들 소년에 대한 보호정책이 매우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부분은 해당부처의 정책 보완 과정을 통해 해결될 수 있는 영역인바, 굳이 소년사법의 영역을 통해 해결하지 않아도 되는 영역이 있다면, 복지적 관점에서 우범소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리라 본다. 소년사법은 어른들의 눈높이로 아이들의 문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문제를 바라봐주고 어른의 관점에서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소년법 제1조에서 말하는 “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실현하는 보다 건설적인 장치로서 기능하게 되길 기대해 본다.

Horizontal lines for writing notes.

